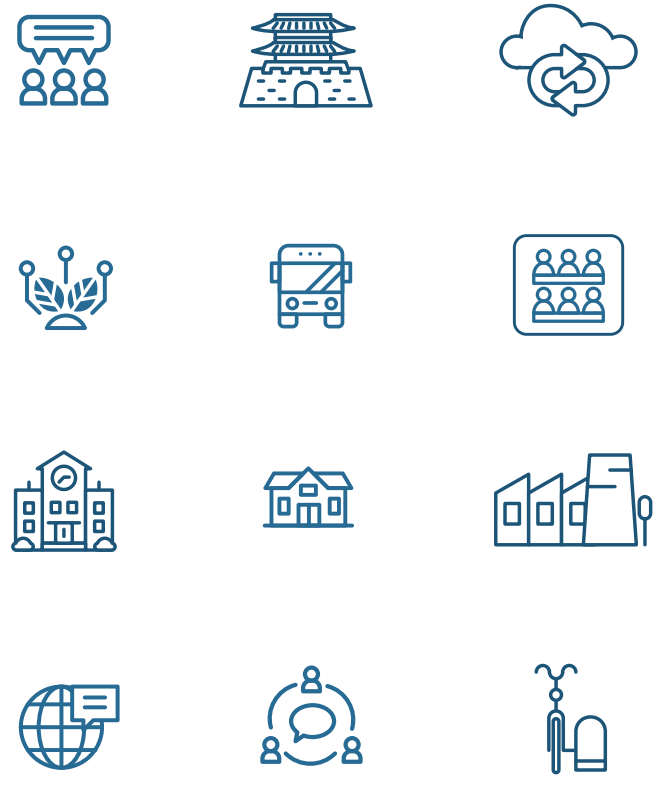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5-제01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2025년 달라지는 시책)

1. 지역 현안 사업 투자심사시 지자체 자체 심사 권한 확대(행정안전부) ····· 9

2.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환경부) ····· 12

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시행(산업통상자원부) ····· 15

4.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고용노동부) ····· 18

5.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 23

6.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 확대(기획재정부) ··· 27

7.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시행(교육부) ····· 28

8.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림축산식품부) ····· 30

9.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연령 및 돌봄기간 확대(농림축산식품부) ···· 32

10.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역 확대(농림축산식품부) ····· 33

11.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 35

12. 농식품 바우처 사업 전국 추진(농림축산식품부) ····· 37

목 차

13. 가임기 남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보건복지부) ····· 39

14.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보건복지부) ····· 40

15. 청소년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문화체육관광부) ····· 41

16.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고용노동부) ····· 43

1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고용노동부) ····· 45

18.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국토교통부) ····· 47

19.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운전자격 제한(국토교통부) ····· 53

20.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확대(국토교통부) ····· 58

21.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확대(중소벤처기업부) ····· 63

22.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소방청) ····· 65

23.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 안전관리 추진(소방청) ····· 67

목 차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한국지방행정연구원) … 71

2.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전환(전북연구원) …… 73

3.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국회입법조사처) …… 79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국회입법조사처) …… 82

5.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국회입법조사처) … 86

6.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여건 점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한국은행전북본부) …· 94

7. 방한 외래 관광객 지방 관광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06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사업 예산 분석(보건복지위원회) …… 125

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 재검토 필요(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29

3.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행정안전위원회) …… 134

4.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필요(교육위원회) …… 141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2025년 달라지는 시책)

1. 지역 현안사업 투자심사시 지자체 자체심사 권한 확대 (행정안전부)

◇ **지자체 자체심사 확대** (전액 자체재원 사업,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업)
◇ **국고보조사업 투자심사 제외 확대** (당초 국비 80% 이상 → 개정 국비 70%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권한·책임 확대, 지역 현안사업 신속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항, 별표제25호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① 전액 자체재원 사업 자체심사 확대 (안 제41조제1항·제2항)

-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홍보관 신축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

②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심사 확대 (안 제41조제1항·제2항)

- 장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우발채무*) 자체심사 확대

* 우발채무: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

③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업 자체심사 확대 (안 제41조제1항·제2항)

-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

④ 국고보조사업 투자심사 제외 확대 (안 별표 제25호)

- 총사업비 중 국비 80% 이상 투자심사 제외 → 국비 70% 이상으로 완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 신구법 비교 주요내용 (시·도 해당사항)≫

구 분	종전내용		⇨	개정내용 (시행 2025.1.7.)	
	자체심사	중앙의뢰심사		자체심사	중앙의뢰심사
문화·체육, 청사*	-	40억 이상		40억 이상 300억 미만	300억 이상
행사·홍보관	30억 미만	30억 이상			
우발채무	-	전부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자치단체간 공동협력	40~300억	300억 이상		40~500억	500억 이상
재정투자심사 제외	국비 비중 80% 이상			국비 비중 70% 이상	

* 당초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중 청사 신축사업과 개별 법령의 조항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의 신축사업은 투자심사 제외대상이었음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제언 ››

※ 2024년 전북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총 4차례 실시하였으며, 133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적정~조건부 통과'시킨 사업이 108건(81.20%), '재검토' 결정이 9건(6.77%), '반려 및 부적정' 결정이 16건(12.03%)으로 나타남

<2024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대상사업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조건부	재검토	반려~부적정
133건	108건(81.20%)	9건(6.77%)	16건(12.03%)

◉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액 자체재원 사업과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자체 심사 가능 규모가 확대**되었고, **국고보조사업 투자심사 제외 대상 또한 확대**되었음

◉ 이는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어 **지역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론 자치단체의 **책임 또한 강화**되어 **재정 건전성이 침해될 소지** 또한 존재함

◉ 또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신규 자체 재원을 발굴할 여력이 부족**하며 **2천억 규모의 지방채**까지 발행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자치단체의 투자 권한 확대 방침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치단체장의 정무적 고려**와 **온정적 평가, 각종 이해관계**를 벗어나 **투자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 또한 **낙관하기 어려움**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3.9.26.)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25년 예산안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예산안 심의시 각 사업별로 꼼꼼히 살펴야 하겠으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 사후평가 제도**에 대하여 최근 5년간 **도의 자체심사 및 기초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확인(자료제출 요구)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결국,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 또한 확대함과 동시에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한 정부의 취지가 그 목적대로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2.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환경부)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통해 유기성폐자원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1 추진 근거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법」 제정·시행(2023. 12.)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 2025년 1월 1일, 민간 2026년 1월 1일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01.

○ **공공 의무생산자**는 **전국 지자체**이며, 2025년부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하여 **생산목표*(2025년 50%)**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야 함

*(공공) 2025년 50% → 2045년 80%, (민간) 2026년 10% → 2050년 80%로 단계적 확대

○ **(생산목표제)** 공공·민간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량에 대하여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생산목표**는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달성 가능**하며, 미달성시 과징금 부과

- 의무생산자는 시설설치 등을 통한 ① **직접생산**, 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처리 위탁을 통한 ② **위탁생산**, 바이오가스 ③ **생산실적 거래** 등으로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의무생산자의 제도 이행지원을 위해 2024년에 바이오가스센터를 개소하였고, 바이오가스 업무전 주기 통합관리 플랫폼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 완료

* 2024년: 명세서 작성 및 검토기능, 2025~2026년: 거래기능 등 고도화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지원수질과)**

○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폐자원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은 '25년 1월부터 공공부분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이 필요하므로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는 많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참고], 법령 추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법 13조제2항, 제15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제안함

참고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주요 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함(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제4조).

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공공영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민간영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처리 사업자로 정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회수·생산계수와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함(제5조).

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며,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8조).

바.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사.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을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수소제조자·집단에너지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

<법제처 참고>

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시행(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산업발전기본법」(2024. 1. 9. 제정)이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

1 추진배경

○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년 1월 10일

○ 이 법률이 시행되면,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 수립·운영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 민간 최초 점등이 이루어졌던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매년 포상,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전기산업 육성 및 홍보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전기산업을 발전·육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미래산업국]**

○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기산업 분야 2025년 수출은 162억달러, 수입은 172억달러, 생산은 45조 4000억원 수준이 예상*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모빌리티, 데이터센터 등 산업의 발전으로 초고압 및 중저압 변압기 미국발 호황이 지속되고, 신규 발전원 설치에 맞춰 송전용량 확대 위한 투자 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전기산업 동향 및 2025년 전기산업 전망', 2025. 한국전기산업진흥원

○ 법 제5조에서는 **전기의 날을 4월 10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전기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을 위한 **조례 등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 「전기산업발전기본법」(2024.1.9.제정) 주요 내용

가. 전기, 전기산업, 전기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하도록 함(제15조).

사.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기관·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4.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고용노동부)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024. 10. 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1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2024년 10월 22일 공포

2 추진배경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

○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출국금지

○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②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지원실]

○ 장기 경기 침체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24년 11월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8659억원(고용노동부 통계포털)**으로 역대 최고치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24년 임금체불액은 516억 6400만원**(전북일보, '25.01.07 기사)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임금체불으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 또한 법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 「근로기준법」(2024.10.22.) 주요 개정 내용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④ 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의 산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횟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의7(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경위·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5.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1 추진배경

○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한 밀착 지원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복귀 지원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04.17.

○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및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신설

○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4.10.공포)

○ 피해자 거주지 근거리에서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치유 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 운영**

- (인프라 확대)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1개소 확대(강원, '25년 총 15개소)
- (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24년 3종 → '25년 5종)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복지여성복지국 여성가족과]

○ 전북자치도는 2021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며, 전문 상담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전북권 1개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22.12.제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통합상담소 운영 외 관련 사업 진행은 미비한 편임

○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합성물(딥페이크)에 대한 위험성 인지 등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근거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의 삭제' 등 권한이 추가된 만큼, 기존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 검토를 제안함

참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2024. 10. 16.>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0. 1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6.>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 12., 2024. 10. 16.>

[본조신설 2018. 3. 13.]
[제목개정 2020. 1. 29.]
[시행일: 2025. 4. 17.] 제7조의3

<중략>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략>

③ 시・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시행일: 2025. 4. 17.] 제7조의4

6.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 확대(기획재정부)

◇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
◇ 1주택자 ('24.1.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 (공시가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김제・남원・정읍시,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1 관계법령 /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025.1.1.부

2 주요내용

①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② (주택요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 (취득기한) 2024.1.4. ~ 2026.12.31.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종부세 1세대 1주택 편성시 주택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저가주택 등	⇨	지방저가주택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상향

7.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교육부)

‹‹ 주요내용 ››

◇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책임감을 지닌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따른 고교학점제 도입**

1 추진배경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주도성과 책임감을 지닌 인재 양성 필요

○ 사회적 불평등·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되어 모든 학생에게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 필요

2 주요내용

○ **(정의)**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

※ 2025학년도 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시 졸업 인정

○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 **(공동교육과정)**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선택 과목을 주변 학교 또는 지역사회(대학/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
- **(온라인학교)** 학교 또는 공동교육과정으로는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각종학교
- **(학교 밖 교육)** 학생 수요로 대학 등 지역사회 기관(대학/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 운영 중점 사항

- **(학생의 수요 반영)** 선택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 수강 신청 절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 **(진로·학업 설계 지도)**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도 체계화
- **(최소 성취수준 보장)**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및 보충지도 등 학교 책임 교육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

○ 추진 성과

- 2019~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100개교)
-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교과교실제 지원(실당 30,000천원, 43개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교당 50,000천원, 32개교), 학생 맞춤형 학습공간 조성(교당 50,000~100,000천원 6개교)

-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총 97개교(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81개교)

○ 추진 과제: 5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과제

학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	· 특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 · 전북온라인학교 운영 · 소수학생 선택과목 운영 지원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연수 운영
진로·학업 설계 상담 지원	·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강화 연수 지원 ·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 상담 운영
학교밖교육	· 학교밖교육(창체형/과목형) 운영 ·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 구축	·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지원 · 고교학점제 홍보·확산 · 전북특별자치도 고교학점제 웹페이지 유지 및 기능 개선 · 이로운 메타스쿨 운영

○ 2025년 고교학점제 운영비 지원

- 공·사립 95개교, 교당 10,000~25,000천원 지원

8.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1 추진 근거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5.01.)

2 추진배경

○ '5도2촌' 등 농촌 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 수요 증가로 임시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농촌체류형 주거시설 도입 필요

3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01.

○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연면적 33㎡), 농촌에 임시 거주하며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 체험

- 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 가능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 농지는 모두 **영농 활동 의무**

※ 타인 소유 농지에 설치한다면 '토지사용승낙서' 증빙 필요

○ **'임시숙소' 용도**의 시설인 만큼, 재해·안전사고 피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지 및 안전기준 준수** 필요

-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 관할 지자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축조 전) 및 농지대장 변경 신청 필수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과거 숙소 등 불법으로 사용된 전례가 많았던 '농막'에 대한 보완 및 5도2촌 활성화와 함께 **전북자치도 농촌 활성화**와 **생활인구 향상** 기대

○ 또한, 쉼터의 사용을 최장 12년까지 제한하던 기존 방침 철회로(농림축산식품부, '24.10.29.),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지자체(시·군·구)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3회 이상 연장 가능 ※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9.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아이돌봄방의 보육 대상 및 운영 기간 확대

1 추진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2 추진배경

○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방을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3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01.(돌봄방별 상이)

○ 농촌지역의 농번기 동안 주말 돌봄 수요의 증가에 맞게,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 확대**

- (기존) 이용 대상 '2세~ 초등학교 2학년' → '2세~초등학교 4학년' 확대
- (기존) 돌봄방 운영기간 '4~8개월' → '4~10개월' 확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 2014년부터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번기 아이 돌봄방을 운영함

○ 돌봄지원 대상 연령 및 돌봄 기간이 확대된 만큼, 아이돌봄방의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환경 등 점검 필요

2025년 전북자치도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사 업 비 : 766,010천원 (국비 50%, 시군 50%)
▷사 업 량 : 25개소, 9개 시·군(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지원내용 : 농번기(4~10개월) 주말동안 아이돌봄방(2세~초등4) 설치 및 운영지원(공모)
*'24년 8개 시군 참여('25년 순창군 추가)

10.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 지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가입료를 일부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

1 추진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2 추진배경

○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에 따른 대상 품목 확대로 더 많은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3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01.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감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지자체 및 농가 의견을 반영해 '27년까지 80개 품목 도입 목표로 대상 확대

※ 대상품목: (2020~'22년) 67 → (2023년) 70 → (2024년) 73 → (2025년) 76개

* 가입 농가: ('01) 8.1천명 → ('10) 52.7 → ('20) 44.2 → ('22) 51.5 → ('24) 59.3

** '24년 농가당 평균 보험료 24.5만 원, 평균 보험금 혜택 419만 원

○ **'25년부터 품목 확대** 및 **지역 확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녹두, 참깨, 생강' 품목 재해보험 가입** 가능

※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본사업(전국) 전환 검토

-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일부 지역**에서 하반기에 **시범 도입 예정**

* 과수 4종: (기존) 적과 전에는 모든 위험을 보장, 후에는 특정 위험만 보장 →
(개선) 재배 전체 기간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시범 운영

** 병충해 보장: ('24) 4개(벼, 감자, 고추, 복숭아) → ('25) 6개(+사과 탄저병, 가을배추 무름병)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2025년 달라지는 시책)

-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 가능하도록 대상 지역 확대

※ 품목별 재배 시기를 고려한 가입 기간 별도 설정 예정

*전국 운영품목: ('24) 55개 → ('25) 64개(+9개 품목: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호두, 차, 오디, 복분자, 살구)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스마트농산과)

○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기상이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 의존도가 높은 농업 분야에서 피해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지난해 호우,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심각했는데 전북 내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으로 전체 8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농가부담 보험료의 약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부 발표자료>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품목('24년 순창군 '두릅'품목 추가 등) 발굴과 다양한 자연재해(일소: 햇볕데임, 열과:열매터짐, 냉해피해 등)로 실제 피해와 보상이 현실과 부합하도록 보험제도 개선책 적극 건의 등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됨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 업 비 : 100,000백만원 (국50%, 도15%, 시군20~35%, 자담0~15%) ※시군별 지원비율 상이
▷사 업 량 : 100,000ha, 14개 시·군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 자부담금 지원(NH농협손해보험)

11.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농가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물량 확대 및 물류기기 통합관리시스템 개편**

1 추진배경

○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확대로 물류기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는 타산업에 비해 높은 단가로 이용하고 있음

○ 기존 문제가 된 물류기기 **공급업체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물류기기 이용이 가능한 개선 마련

*(물류기기) : 농산물 출하·운송·보관을 위한 기기로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목재상자 등
**파렛트의 경우 농업계는 개당 2,970원(국고보조)~6,500원(비보조), 타산업계는 평균 2,500원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01.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농업계 전체 사용물량의 약 70%를 보조하여 **물류기기 임차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 ('24) 파렛트 1,850천매(전체 사용물량의 16.7%) → ('25) 파렛트 7,751천매(70%)
  ('24) P박스 40,120천매(전체 사용물량의 26.7%) → ('25) P박스 105,519천매(70%)

○ **물류기기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kr)**을 **개편**하여 전체 물류기기에 대한 입출고내역, 재고 현황 등을 관리하여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

- 사업시행 주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협경제지주'로 변경**하여, 풀시스템 직접 관리를 통해 농업 분야 물류기기 임차시장의 주도권 확보

<현 행>		<신 설>
농식품부 → aT → 물류기기 공급업체 *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 → 지자체 → 농협·법인·농가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24.11.)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스마트농산과)

○ 정부는 작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방안' 조치 중 하나로 지난 20여 년 간 추진해 온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 구조 개편이 실행됨

○ 본 사업이 농식품부 직접 사업에서 '25년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북 내 시군에서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지원하며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있음

○ 올해 사업부터 지방비 20%가 매칭됨으로써 지자체 부담은 늘었으나('24년 국비40%, 자부담60% 부담), **사업 시행주체 변경**(기존: aT, 물류기기 공급업체 ⇒ 변경: 지자체, 농협·법인·농가) 및 **공급업체 다변화, 지원 물량의 확대**('25년 70%목표)로 결과적으로 물류기기 임대단가를 낮추어 농가에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1)]

* 파렛트 1만장 사용 시, 농민 등 부담액은 '23년 기준 3,800만원, '24년 4,200만원, '25년 2,500만원으로 감소 효과

2025년 전북자치도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사업

▷사업규모 : 55개소(13개 시군참여)
▷사 업 비 : 5,840,000천원 (국10%, 시군20%, 자담70%)
▷지원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등
▷지원내용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

○ 이번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구조 개편 방향의 핵심이 '공적서비스 영역으로의 전환'인 만큼, 기존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개편 체계의 안착을 위한 협력이 요구됨

1) 물류기기 지원사업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돌입(2025.1.21), 농업분야 물류기기 보조사업 물량 7~80%까지 확대(2024.12.10.)./ 한국농어민신문 참고

12.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생계급여 대상자 중 임산부·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전국 시행**

1 추진배경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03.

○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본사업 추진**

- (사업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

○ 5년간('20~'24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시행되며 **지원금액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4인가구 기준 연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 월 18만7천원/10인 이상 가구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사 용 처) 온·오프라인(ex.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 등) *지자체별 상이

※ (2024) 월 8만원(4인가구) × 6개월 → (2025) 월 10만원(4인가구) × 10개월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식품산업과]

○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 및 농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음. '25년에는 사업이 전국 시행됨에 따라, 도비가 매칭되어 진행됨

※ '25년 전북 농식품바우처 사업비: 4,776,000천원 (국 50%, 시군 15%, 시군비 35%)

*14개 시군 5,436가구 대상(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대상선정)

○ **농식품바우처 사업대상 확정**에 따른 **14개 시·군의 사업대상자 참여**를 독려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계층 간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공급 기반 구축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작년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였으나, **'25년 본사업 시행 시, 중위소득 32% 이하로 대상자가 축소**되었음. 사업이 전국 시행되며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기간이 확대되었으나, 참여자 만족도 결과 등을 수렴하여 추후 **사업대상 범위 확대 등 전북형 사업 추진**을 제안함

* (4인가구 기준) '24년 기준 월 8만원, 6개월 지급 → '25년 월 10만원, 최대 10개월 지급

13. 가임기 남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 임신 사전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임력 향상·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1 추진배경

○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필요성 제기 *(추진근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19.)- 3. 건강한 임신지원 확대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01.

○ 결혼·자녀 수 무관 **모든 가임기 남녀(20~49세)**에게 한도 내 실비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15~19세 부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검사**에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포함 검사**에 최대 **5만원** 지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복지여성복지국 건강증진과]

○ 전북자치도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통해, 가임기 남녀가 조기에 고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중재·치료하고 적기에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전에는 가임기 부부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5년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사업 대상이 확대된 만큼 사업의 적극 참여 독려 필요

2025년 전북자치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25~49세 남녀 (혼인, 자녀 수 무관)
▷사 업 비 : 499,000천원 (국비 50%, 도 25%, 시군 25%)
▷사 업 량 : 5,300명, 14개 시·군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

14.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가 차상위 계층 아동까지 확대

1 추진배경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01.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대상 확대**

- (현행)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아동(만 0~17세)
- (변경)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차상위계층 아동(만 0~17세)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 *적립금 예시: (5만원 적립 + 10만원 지원 = 15만원)

※ 만기(18세) 해지 후 자립을 위한 용도(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등) 사용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복지여성복지국 여성가족과)

○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가 함께 운영되는 사업으로 '25년 사업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 정책의 주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의 가입 독려 및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적립금 '미수령금' 안내 등 지자체 및 담당기관의 운영 관리가 요구됨 ('23년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 65.7%)

* '25년 전북자치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예산 : 13,370,990천원 (국비 70%, 도 9%, 시군 21%)

cf. 전북자치도 사업 지원규모 ('24년 13,760명 → '25년 21,681명 대상자 확대)

15.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 등 사용시 선량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및 신분증 제시요구

1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2 추진배경

○ 청소년의 악의적 영업장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 제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

3 주요내용

○ 지난 10월 22일,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 및 공포**함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조치함

○ 또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통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되었던 행정처분 면제가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나이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중위생관리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 등도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됨

- 숙박업 영업자, 24시간 찜질방 영업자, 공중목욕장업자,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 개정내용 중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24.10.22.)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25.4.23.)에 시행될 예정이며,

○ 면제처분 대상 사업자 및 위반항목 확대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기 존	변 경 (확대)
대상 사업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PC방)	게임물제공사업자 (예시) • 일반게임제공업: 성인오락실 •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오락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PC방 + 청소년게임제공, PC방+타업종
위반사항	게임물 등급 이용·제공 위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위반사항 추가

○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속아 불가피하게 위법영업을 하게 된 게임물 제공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6.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1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2 주요내용

①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시행일: 2025.2.23.부)

구 분	기 존		개 정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1년		1년 6개월 (4회 분할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정부 급여지원 기간)	10일 (5일)		20일 (20일)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유급기간)	3일 (1일)	⇨	6일 (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8세 이하		12세 이하
미숙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90일		10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기준)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②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시행일: 2025.1.1.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변경, 사후지급 방식 폐지>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향 지원 특례>

(현행) 1개월 상한액 200만원 → **(개편)** 250만원 (2~6개월은 현행과 동일)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향>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 이후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상향>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 200만원 → **(개편)** 220만원

1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유형을 신설하고, 지원업종 및 대상청년 대상을 변경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1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
- **(유형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3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2025년 달라지는 시책)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구분	2024년		2025년	
			Ⅰ유형	Ⅱ유형(신설)
유형	단일 유형	개편 ➡		
지원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지원기간	2년		1년	2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1,200만원〈2년〉 *720만원(60만원/월)+ 2년차 480만원		720만원 〈1년 지원〉	720만원 〈1년 지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	480만원〈2년〉 *18·24개월차 각 240만원
목표인원	12.5만명		5.5만명	4.5만명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지원실]

○ 전북자치도에서는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5년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친화친구기업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전북 청년 직무 인턴 운영,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전북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 최근 전북자치도는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및 다른 지역과의 **임금격차 및 일자리의 미스매칭** 문제로 분석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의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기업들에게 지원이 쏠려 있어 **고용노동부의 Ⅱ 지원유형**이나 **타 지자체 사업을 분석**하여 **새로운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의 전북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18.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국토교통부)

◇ **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

1 추진배경

○ 기반·편의시설 공급 및 주택 정비 유도를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뉴:빌리지 사업 도입

○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참고) 뉴:빌리지 사업개요 >

- (**목적**)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 공급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
- (**절차**) 기초사업신청서 작성 → 시·도사업 신청 → 국토부공모·선정 → 기초사업 추진
- (**지원**)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원
  * 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하여 단지형 계획시 최대 30억원 추가 지원
  -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한국부동산원)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2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 '24년 뉴:빌리지 사업 선정 결과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	3	2	1	3	1	1	3	2	1	4	4	3
종로옥인 종로신영 중 강북	사상 진 연제	부평 남동	중	중 남 북	중	광산	광명 수원 김포	천안 금산	부안	강진 광양 담양 장흥	영주 경주 구미 상주	창원 남해 양산

○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며,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

○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

○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

* 소규모정비(주민합의체구성), 개별재건축(건축신고), 공공임대(사업승인), 매입약정(약정체결) 등

3 선정된 지역의 주요 계획안

○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

< 종로 옥인 >



▸ (공동시설)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노인) 등
▸ (주택정비) 80호 계획(사업 신고·승인 절차 완료 4호)

< 경북 영주 >



▸ (공동시설)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및 공원 등
▸ (주택정비) 125호 계획(사업 신고·승인 절차 완료 30호)

○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

-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

< 서울 강북 >	< 경기 광명 >	< 전남 강진 >
		
▸ (공동시설) 천변 정비, 주차·체육시설 등 ▸ (주택정비) 단지형 연립(70세대 내외)	▸ (공동시설) 공원정비, 지하주차장 ▸ (주택정비) 1개동(40세대 내외)	▸ (공동시설) 돌봄·체육시설, 공원·주차장 ▸ (주택정비) 연립주택(114세대 내외)

○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

< 경북 경주 >	< 울산 북구 >
	
▸ (편의시설) 주차장 33면 등 ▸ (주택정비) 1개동 12세대 규모(구역내 확대 유도)	▸ (편의시설) 주차장 10면 규모 ▸ (주택정비) 1개동 8세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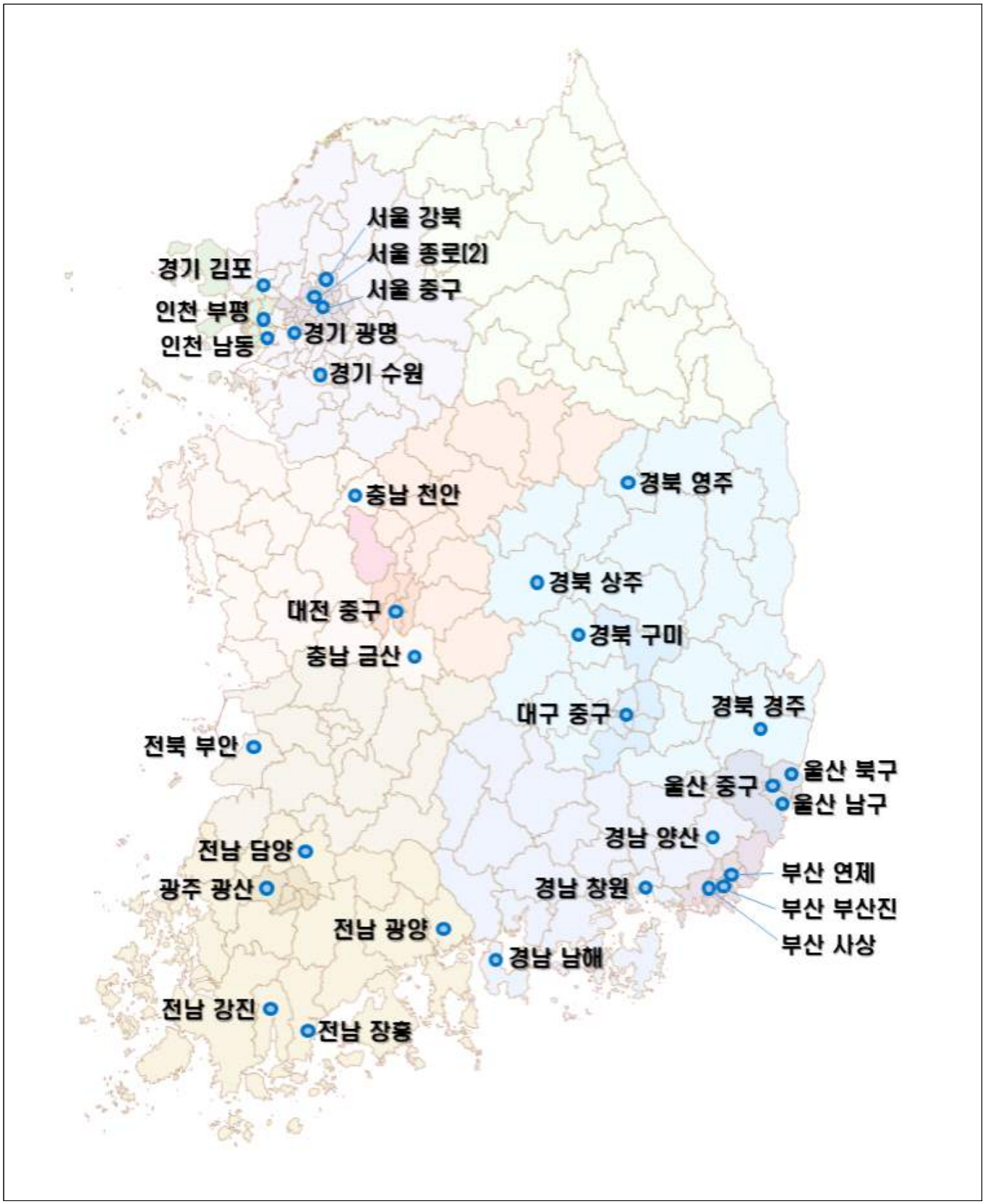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 전북자치도는 많은 자치단체가 지역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사업에 많은 자치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뉴:빌리지 사업은 시·도별 매칭비율*을 차등화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예산과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 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참고1 뉴:빌리지 신규선정 사업지 위치도



참고2 '24년 뉴:빌리지 선도사업 신규선정안(32곳)

광역	기초	총사업비 (국비)	기간	면적 (㎡)	주요내용
서울 (4)	종로구 신영동	201.9억원 (국비 52.12억원)	'25~'29	44,07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정비 사업지원을 통한 주택정비 활성화
	종로구 옥인동	518.1억원 (국비 55.8억원)	'25~'29	30,282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유로 재개발구역 직권 해제지역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정비 사업지원을 통한 주택정비 활성화
	중구 회현동	254.39억원 (국비 101.356억원)	'25~'29	63,944	남산 최고고도지구 등 도시규제로 인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회현동 일대를 대상으로 주민수요에 기반한 소방도로 확충, 주차장 조성 등 기반·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공공선도사업 및 민간개발사업 등 연계
	강북	218.79억원 (국비 74.028억원)	'25~'29	50,485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규제에 따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뉴:빌리지 현장지원센터, 휴머네이터 등 주택정비를 지원하여 정비 활성화 유도
부산 (3)	사상	308.31억원 (국비 150억원)	'25~'29	167,000	주례동 주례지구 도심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주차시설과 건강문화·교육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센터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공원과 지역 안전강화를 위한 가로정비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주택정비 기반 마련
	부산진	474.73억원 (국비 154.5억원)	'25~'29	169,220	사방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공공의 생활 인프라 시설 공급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노후주택 정비 및 신규주택 공급 유도
	연제	200.5억원 (국비 100억원)	'25~'29	105,774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지역주민의 설치 요구가 절실한 공영주차장, 도서관, 공원, 도로 등 생활SOC를 확충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재건축 등 주택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
대구	중	300.6억원 (국비 150억원)	'25~'29	96,360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문화교육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편의·기반시설을 공급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성 분석 지원 등 주민 주도 주택정비사업 지원
인천 (2)	부평	250억원 (국비 70억원)	'25~'28	94,000	노후 저층 주거지역 내 주차장 조성, 공원 리뉴얼, 작은 도서관 조성 등 편의·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정비,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보행친화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환경 개선,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정비 추진을 위한 주택정비 지원체계 구축
	남동	281.69억원 (국비 138억원)	'25~'28	112,237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로부터 소외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지역 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골목관리소 운영을 통해 자발적 주택정비 사업 유도 및 지원
광주	광산	196억원 (국비 98억원)	'25~'29	154,204	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 기반의 주차장, 복합문화돌봄시설 등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정비계획 수립, 지자체 컨설팅 지원 등 주민 주도의 주택정비사업 지원
대전	중	308.89억원 (국비 150억원)	'25~'29	75,452	양호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노후한 기반시설 및 주택으로 인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기반·편의시설 개선과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정주 매력도 증진 도모
울산 (3)	중	1,064.6억원 (국비 150억원)	'25~'29	78,609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태화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이 자율주택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노후한 도시에 활력 증진 도모
	남	316.0억원 (국비 150억원)	'25~'29	46,800	'60년대 개발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노인 문화교육·돌봄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민 주도의 노후주택 정비사업 지원
	북	1,545.97억원 (국비 150억원)	'25~'29	93,000	정자항 배후 노후 저층 주거지 내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수요대응형 기반·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살고 싶은 정자지구 제로빌리지(주거격차, 일상불편 제로) 조성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2025년 달라지는 시책)

광역	기초	총사업비 (국비)	기간	면적 (㎡)	주요내용
경기 (3)	광명	430.28억원 (국비 150억원)	'25~'29	134,300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택정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산과,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
	수원	284.45억원 (국비 150억원)	'25~'29	99,854	재개발 해제지역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공원, 복지시설, 돌봄시설 등의 기반·편의시설 공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지원센터 설치 및 주택정비 활성화
	김포	252.3억원 (국비 150억원)	'25~'29	144,000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인 사우 원도심에 주민수요에 기반하여 아파트 수준의 주민공동이용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주차공간을 공급하고, 생활안전시설 설치 및 민간자율 주택정비 촉진을 통한 뉴:빌리지 조성
충남 (2)	천안	252.5억원 (국비 150.3억원)	'25~'29	147,854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인 원성동 일원에 주민편의시설(주차장,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을 공급하고, 주민 주도의 주택정비 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유도
	금산	470.47억원 (국비 150억원)	'25~'29	94,309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대상지의 정주환경 개선(공원 4,806㎡, 주차구역 223면 신설, 불량도로 접합률 7.42% 절감 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전북 (1)	부안	176.8억원 (국비 84억원)	'25~'29	83,582	맹지, 노후주택, 부족한 기반·편의시설 등으로 개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 개설과 기반·편의시설 복합화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현장지원체계 구축으로 민간의 자율적 주택 정비·공급 활성화 도모
전남 (4)	강진	328.3억원 (국비 129억원)	'25~'29	199,874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강진군 주거지원 특수시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 주택신축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과 기업의 자율적 주택 정비 견인
	광양	514.2억원 (국비 144억원)	'25~'29	103,563	쇠퇴한 원도심의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정비 지원, 생활편의 기반시설 구축, 건강 복지 거점시설 조성 등을 통한 자발적 주택 정비 유도
	담양	249.95억원 (국비 100억원)	'25~'29	110,473	사업대상지 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 공급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택정비 등을 지원하고, 주택정비 기반시설 강화, 복합편의시설 조성으로 주민의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
	장흥	321.47억원 (국비 150억원)	'25~'29	143,000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높고 접도율은 취약하며 기초생활인프라가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충족된 지역으로 민간 주도 자율주택정비와 생활인프라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
경북 (4)	영주 휴천동	250.0억원 (국비 150억원)	'25~'29	98,281	'70년대 조성된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로 전면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기 힘든 지역으로 주차장 및 주민 필요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만족도 향상
	경주	497.0억원 (국비 157.2억원)	'25~'29	182,000	'85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 258호 공급을 지원하여 대학생, 청년 및 외국인 근로자 주택수요 대응
	구미	525.75억원 (국비 150억원)	'25~'29	83,126	도농통합에 따라 쇠퇴하여 정비사업 소외지역으로 전락한 선산 완전·동부지구 내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 복합문화시설 등의 편의시설 공급 및 주민 주도의 주택정비 활성화 유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추진
	상주	402.2억원 (국비 150억원)	'25~'29	152,387	노후한 기반시설 및 주택으로 인해 쇠퇴하는 주거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공급 등을 통해 주거 매력도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개선 도모
경남 (3)	창원	260.7억원 (국비 150억원)	'25~'29	148,000	병암동의 자발적 주택정비 유도를 위해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기반·편의시설 공급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남해	214.11억원 (국비 123.6억원)	'25~'29	161,070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신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
	양산	352.0억원 (국비 150억원)	'25~'29	134,617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쉼터, 주민생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 정비 및 주민주도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19.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제한 ·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국토교통부)

◇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 전과별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

1 관계법령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

2 추진배경

○ 배달서비스 이용 국민 안전 확보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3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년 1월 17일

○ 2025년 1월 1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제1항 1호에 해당되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배달업 종사가 제한

* 사업자가 배달업 종사자와 계약체결(갱신 포함) 시 범죄경력 확인서 제출 요구, 또는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신청

○ 해당 제도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여 운용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2025년 달라지는 시책)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별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간이 정해지며, 최대 2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이 제한

○ 이번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7일 시행되며, 시·군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 2025년 생활물류서비스업 종사자의 강력범죄 이력확인을 철저히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또한 전북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법 개정에 따른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참고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024.1.16.) 주요 개정 내용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2025.1.14.) 주요 개정 내용

제14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참고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4.2.20.) 주요 개정 내용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20.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및 적용 지역 확대(국토교통부)

◇ 다자녀 가구 유형에 대하여 환급률 상향(일반 20% → 2자녀30%, 3자녀 이상50%)
◇ 참여 지자체(189개 → 210개) 및 카드사(11개 → 13개 카드사)도 확대 예정

1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0조의12/제12조제5호

2 추진배경

○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

○ 전국적인 대중교통비 인상 흐름에 따라 서민·청년층 등 대중교통 실수요자의 교통비 부담 가중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년 1월

○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

**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

○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

○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

○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

○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

*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7,000원 추가 환급 가능

K-패스	유형 정의	적립률	예) 2,000원 기준
일반	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	20%	400원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30%	600원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3%	1,070원
다자녀(2자녀)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이 이하인 성인**	**30%**	**600원**
다자녀(3자녀)		**50%**	**1,000원**
비고	•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환급 •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높은 환급률 적용		

○ '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

* 전남 7개, 경북 9개, 강원 3개 등 19개 기초 지자체 제외 전 지자체 참여 예정

○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

* (기존)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BC바로, 케이뱅크, 기업, 광주),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모바일이즘, 카카오페이), DGB유페이 + **롯데, 레일플러스, BC(IM뱅크), KB국민(카카오뱅크), 이즘(네이버페이)**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건설교통국)

○ 대중교통 환급지원(K-패스)(계속) 25년 본예산 편성 내역

- 사 업 비 : 1,650백만원(국비 825, 시군비 825) ※ 국비 50%, 시군비 50%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른 교통비 환급 지원
- 증감사유 : 참여 시군 확대(6개→14개) 및 이용자 증가(2,455명→9,396명)

○ '23년 말부터 도내에서는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반영이 무산되었고, 청소년 교통지원 정책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있는바, 사업부서에서는 기존 K-패스 사업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자체의 맞춤형 K-패스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연계·발굴**하여 **전북자치도만의 맞춤형 교통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 필요**

참고 1 지자체 맞춤형 K-패스 추진 관련 현황

□ **[경기 · 인천]**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인천시민에게 **환급률 상향*, 월 60회 제한 폐지 등** 추가 혜택 제공('24.5~)

* (경기·인천) 35~39세도 청년으로 인정 +10%p(총 30%) / (인천) 65세 이상 +10%p(총 30%)

□ **[부산]** **동백패스*** 이용자가 **K-패스** 가입 시 동백패스와 K-패스의 혜택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환급('24.8~)

* '23.8월부터 시행 중인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서, '24.6월 기준 45만명 이상 이용 중(부산 대중교통 이용금액 월4.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을 최대 4.5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

이용 횟수	이용 금액 (a)	일반		청년		저소득	
		K패스 (a)×0.2	동백패스 (a)-4.5만원	K패스 (a)×0.3	동백패스 (a)-4.5만원	K패스 (a)×0.53	동백패스 (a)-4.5만원
36	55,800	11,160	10,800	16,740	10,800	29,574	10,800
37	57,350	11,470	**12,350**	17,210	12,350	30,396	12,350

※ 부산 시내버스 요금 1,550원 기준 적용 예시

□ **[세종]** **月2만원 선결제** 시 충청권 대중교통 **5만원까지 무료 이용** 혜택,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K-패스 혜택(20~53%)만 적용('24.9~)

□ **[광주]** **K-패스**를 이용하는 **광주시민** 대상 **청년 범위 확대, 저소득층 환급률 상향*** 등 추가 혜택 제공('25.1월~)

* 청년 범위 39세까지, 65세이상 +30%p (⇒ 총 50%), 저소득층 +11%p (⇒ 총 64%)

□ **[경남]** K-패스를 이용하는 **경남도민** 대상 **청년 범위 확대, 저소득층 환급률 상향, 월 60회 제한폐지** 등 추가 혜택 제공('25.1월~)

* 월61회~무제한 지원, 청년 범위 39세까지, 저소득층 +47%p(⇒ 총 100%), 75세이상 어르신 최소횟수 제한 폐지(월 1회 이상 이용시)·추가 혜택 +80%p(⇒ 총 100%)

< 지자체 사업별 비교 >

구분		K-패스	The경기패스	인천I-패스	동백패스	이응패스	광주G패스	경남패스
지원대상	일반	20%	좌동					
	청년	30%	좌동					
	저소득	53%	좌동				64%	100%
	추가	-	청년 19~34세→39세까지 -	청년 19~34세→39세까지 65세↑30%	혜택 비교 후 큰 금액 지원	5만원까지 실부담 2만원 효과	청년 19~34세→39세까지 65세↑50%	청년 19~34세→39세까지 75세↑100%
횟수	최소	15회	15회		금액기반		15회	15회
	최대	60회	+ 61회~무제한				60회	무제한
재원		국비·지방비	추가 혜택은 전액 지자체 재원 기반					

참고 2 K-패스 참여·미참여 지자체 현황

광역	'25년 참여(210개) ='24년(189개) + '25년 신규(21개)	미참여(19개)
서울(25)	서울 전체('20.7월)	-
인천(10)	인천 전체('19.6월)	-
경기(31)	경기 전체('19.7월)	-
대전(5)	대전('19.6)	-
세종(1)	세종('19.6)	-
충북(11)	청주('19.6), 옥천('20.1), 제천('21.1), 충주('23.1), 음성·진천·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24.5)	-
충남(15)	아산('20.4), 천안('20.4), 서산·당진·논산·공주·보령·홍성·예산 ·부여·태안·서천·금산·계룡·청양('22.1)	-
광주(5)	광주('19.10)	-
전북(14)	전주('19.6), 익산('20.1), 남원('20.1), 완주('20.1), 군산('20.4), 정읍('22.10) **,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25.1)**	-
전남(22)	순천('21.1), 무안('21.1), 신안('21.1), 여수·목포·해남('22.1), 광양('22.8), 나주('22.9), 담양('23.1), 장성('24.5), **곡성·함평·고흥·화순·장흥('25.1)**	강진, 구례, 보성, 영광, 영암, 완도, 진도
부산(16)	부산('19.6)	-
대구(9)	대구 전체(군위군 편입('23.7))	-
울산(5)	울산('19.6)	-
경북(22)	포항('19.6), 영주('19.6), 경주('20.1), 김천('21.1), 영천('21.1), 구미, 상주('22.1), 칠곡('22.9), 경산, 안동('23.1), **문경·고령·성주('25.1)**	봉화, 영덕, 영양,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경남(18)	양산('19.6), 거제('20.1), 김해('20.1), 밀양('20.1), 산청('20.1), 진주('20.1), 창녕('20.1), 창원('20.1), 통영('20.4), 고성('20.4), 사천, 함안('22.1) → 경남 전체('23.1)	-
강원	춘천('21.6), 강릉('22.1), 원주('22.6), 홍천·양양('23.7), 동해·삼척·태백·횡성·영월('24.5), **속초·평창·철원·화천·인제('25.1)**	고성, 양구, 정선
제주	제주('21.1), 서귀포('21.1)	-

※ 기초 시군구 숫자(229개)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3.12.31)'자료의 226개 기초 지자체 수에 세종시 및 제주도 제주·서귀포시(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구분 집계한 숫자(226+3)

21.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확대(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

1 추진배경

○ 개인 사업자 폐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급증

※ **폐업 개인 사업자 수(만명): (2020) 82.8 → (2021) 81.9 → (2022) 80.0 → (2023) 91.1**

2 지원대상

○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신청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임대사업자/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3 주요내용

○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 관련
(점포철거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現 최대 250 → 改 최대 400만원)**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지원 등

○ **(특화취업지원)** 취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취업정책 연계 지원

* (취업교육) (기초) 재취업 변화관리, 자아성찰 등 (심화) 1:1심층상담, 현장교육 등
(전직장려수당) 취업활동 시 60만원 + 취업성공 시 40만원 지급(총100만원)
※ 고용부와 협업하여 취업활동 및 취업후 근속 시 수당을 연계하여 지급

○ **(재기사업화지원)**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 진단 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 국비 최대 2천만원 지원(자부담비율 50%)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지원실/경제통상진흥원)

○ 전북자치도에서 **'24년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은 3만 1029명(국세청 국세 통계자료)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하여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체당(45개 업체) **지원금액이 20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現 최대 250 → 改 최대 400만원)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전북자치도에서도 사업장 정리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임

22.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소방청]

◇ **차량 화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인승 이상 승용차동차에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또는 비치** (시행일 : '24.12.1.)

1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1조

2 추진배경

○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소화기 설치 의무를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설치 의무를 확대 적용**함

3 주요내용

○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작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차량용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필요**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함

4 기대효과

○ 차량 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 최소화 및 본인 차량 뿐만이 아닌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참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 등

□ 소화기 능력단위

○ 소화기의 소화능력은 단위로 표시한 것이 능력 단위*

* 소화기 1단위는 소나무(73㎝ x 73㎝) 90개 + 휘발류 1.5ℓ 연소 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

※ 자동차용소화기는 현재 분말소화기만 생산 (0.7Kg, 1.5Kg, 3.3Kg)

-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 고온시험 실시하여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함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0조(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 제30조의2(차량용소화기의 고온시험)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차량종류	규 격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설치 (비치) 위치
승용자동차	5인승 이상	1단위 (0.7kg)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승합자동차	경형 (1000cc 미만)	1단위 (0.7kg)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소형 (15인승 이하)	2단위 (1.5kg) 1개 or 1단위 (0.7kg) 2개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중형 (16인 ~ 35인승)	2단위 (1.5kg) 2개	**23인승 초과 (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 X 20㎝ 이상의 공간 확보
	대형 (36인승 이상)	3단위 (3.3kg) 1개 + 2단위 (1.5kg) 1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형 (1톤 초과 ~ 5톤 미만)	1단위 (0.7kg)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대형 (5톤 이상)	2단위 (1.5kg) 1개 or 1단위 (0.7kg) 2개	사용하기 쉬운 곳

23. 불특정 다수 이용 장소 안전관리 추진 [소방청]

◇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등급 부여 기준 및 맞춤형 안전관리 추진으로 무인점포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교육·홍보를 통한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1 현황 및 추진배경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48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부상 172명으로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은 9.3%로, 일반건축물의 6.2%대비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최근 5년간의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 792건(40.7%), 전기적 요인 779건(40%), 기계적 요인 등 기타 377건(19.3%)으로 나타남

○ 이에 다중이용업소 또는 무인점포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종합대책* 및 안전관리계획을 추진

* 이번 종합대책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른「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무인점포 등에 대한 안전대책도 포함

2 주요내용

1. 불특정 다수인 이용 장소 운영제도 개선

○ 화재 위험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 개선

-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노후도, 면적, 이용빈도 등 조건을 확인하여 화재안전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소 내 가연물의 양, 소방시설의 성능, 피난 난이도 등 구체적인 요소를 종합 반영해 화재안전등급(A~E)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

○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강의 수강 → 향후 실습 중심의 교육 제공 방침

2. 불특정 다수인 이용 장소 안전관리 강화

○ 기존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무인점포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안전규제에 적용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소방청은 무인점포 자율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 하고 있음

- 무인점포 내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하고, 장기적으로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 한편,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비상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유형별 (발코니형, 부속실형)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비상구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비상구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등 등급별 관리방안을 세분화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 개선과 안전장치 설치 재강조 및 관련 교육도 병행할 계획임

3. 불특정 다수인 이용 장소 교육 및 홍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증된 업소는 온라인 상에서 해당 상호 검색시「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주의 참여를 독려

○ 지난해 발생한 경기 숙박시설 화재를 계기로,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중 '완강기 등 피난시설 사용법 교육'을 필수 내용으로 추가하여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화재 시 초기 대응 및 피난 방법을 숙지하도록 함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소방본부]

전북 소방본부는 취약요인 선제적 개선,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업무 내실화 및 규제합리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추진중에 있음

1. 취약요인 선제적 개선

○ 화재 취약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법·위험 요인을 발굴·조치하여 선제적 예방활동 실시함

- 연중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20% 내외 선정, 1개조 2인이상 현장 방문하여 위법사항 확인 및 컨설팅 병행

○ 분기별 다중이용업소 주요 취약대상 현장방문행정을 통해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 강화

구 분	실시대상	비 고
1분기	· 화재위험평가 대상	
2·4분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3분기	· 1·2·4분기 실시대상 외 대상 중 30% 선별 실시	

○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무인점포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무인점포 전수조사 및 업종분석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 불특정 다수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비상구 등 탈출로 확인문화 정착으로 신속 피난유도를 위해 점포별 주된 출입구에 **'비상구는 생명문' 포스터** 부착 및 **비상구 주변 물건적치 및 폐쇄행위 근절**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취약 비상구(C등급)의 연 1회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2.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제도 활성화로 혜택을 확대 추진중에 있으며,

-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안전업소' 현황표기 추진 및 신청자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지속 추진
- 안전관리우수업소 영업주 표창 수여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건의

* 신규영업장 (도지사 표창), 갱신 영업장 (소방서장 표창) 등 장관 및 소방청장 표창 수여 추진 (소방청) 병행

○ 이론위주 집합 교육의 현장 적응성 한계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추진

- 영업주 (종업원)가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존) 소방관서 실습·체험실만 활용

→ (개선) 안전체험관·소방학교·안전원으로 확대

○ 민·관 협업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능단체 간담회 및 협의회 등 안전협의체 운영

- 허가관청 (시·군, 세무서), 전문가 (기술사·관리사), 직능단체(외식업중앙회 등) 등 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간담회 실시

3. 업무 내실화 및 규제 합리화

○ 실무 담당자간 다중이용업소 업무 컨설팅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정기적 연찬회 (연 1회) 및 담당자간 실무경험 및 민원사례 공유 채널을 계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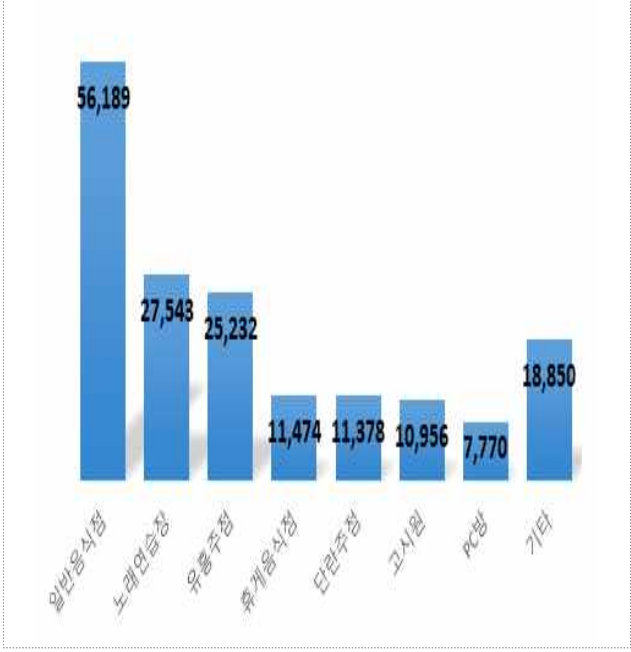
○ 방염성능검사 기자재의 노후, 고장 등 원활한 방염업무를 위해 방염성능검사 기자재를 보강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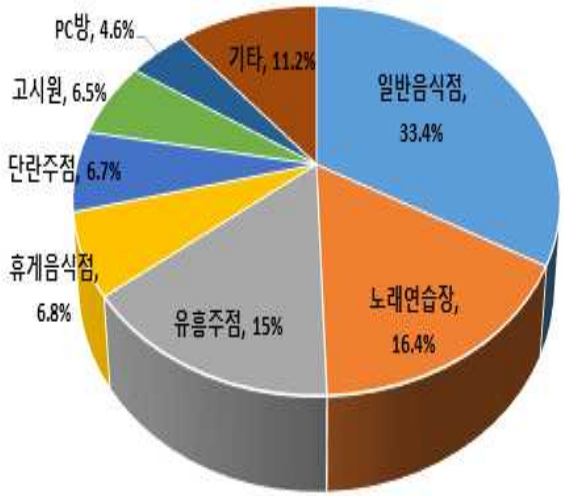
참고 전국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현황('24년 기준)

□ 다중이용업소 현황

<단위: 개소 / 출처: 2024년 소방청 통계연보>

총 계	일반음식	노래방	유흥	휴게음식	단란	고시원	PC방	기타*
169,392	56,189	27,543	25,232	11,474	11,378	10,956	7,770	18,850





□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 기간: '20.1.1. ~ '24.12.13.>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남/여)	부상(남/여/미상)
합 계	**189,275**	**1,538**	**10,258**	**187,327**	**1,528**	**10,086**	**1,948**	**10**	**172**
2024년	35,379	272	1,965	35,105	272	1,947	274	-	18(12/5/1)
2023년	38,857	283	2,194	38,462	283	2,170	395	-	24(14/10)
2022년	40,113	342	2,327	39,720	333	2,250	393	9(6/3)	77(45/32)
2021년	36,267	276	1,854	35,969	276	1,837	298	-	17(12/5)
2020년	38,659	365	1,918	38,071	364	1,882	588	1(1/0)	36(23/12/1)

※ **5년간** 다중이용업소 **누적 화재**는 **1,948건**으로 **전체 화재의 1%**, **인명피해**는 **사망10명 · 부상172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0.6%**(사망), **1.6%**(부상)임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한국지방행정연구원('24.12.)

<< 분석요약 >>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명확한 지방의회의 권한
◇ 하지만, 현행 법령상 인사청문 실시에 관해 강제성이 없어 미완인 견제 장치로 존재
◇ 현행 법령 개정 또는 「지방의회법」 제정시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해 상세히 규정 필요

□ 분석배경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 중임

○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시행 과정에 인사청문 대상 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강제성을 지니지 않아**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 '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32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전북도의회의 경우) **'23년 12월,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임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규정> (본조신설 2023.3.21.)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주요 규정>

<대상직위>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북연구원장 등 9명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첨부서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병역 및 등록대상재산 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재산·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주민등록초본, 논문·연구실적자료, 교통특례위반 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제외, 즉시 제출)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한계

- 자치법규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음 (전북도의회 해당사항 없음)
- 법상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와 관련, 법에 규정된 인사청문 대상보다 그 대상을 축소하여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 해당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좌우**됨 (인사청문 요청 **재량이 자치단체장에 있음**)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 「지방자치법」의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현행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중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를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로 개정,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 제도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절차 등 규정 마련

*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요구권 및 제출 의무 등 (국회 「인사청문회법」 참고)

→ 별도의 법률 제정 : **「지방의회법」** 제정시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해 규정

□ 결론 / 시사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행에 관한 재량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 요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촉구** 및 **운영 규정 보완** 노력

2.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전환 (전북연구원 ('24.12.))

≪ 연구요약 ≫

◇ 예측되지 않는 기상현상은 이상기후를 일으키고 농산물의 생산과 수급에 변동을 일으키며,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은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식품산업에 대한 수요를 가속화함

◇ 식품 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저탄소 식품의 연구개발 및 기후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재배 적합한 작물의 발굴과 지역선정, 신품종 개발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연구배경 및 목적

○ 기상청 보고에 의하면 2024년은 기후변화가 전년에 비해 심화, '기후플레이션시대(Climate-flation)[2]'의 도래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음. 기후플레이션 체감이 본격화된 만큼, 2025년 농식품 물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24년 여름 전북자치도 평균최고기온이 31.1에서 34.0℃로 상승했으며 지역의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3.5%로 상승

○ 기후변화로 인한 변칙적 환경변화는 잦은 산지 변화 및 지역별 생산 작물 형태 변화와 함께 식품 원료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확산과 식품 소비 형태 변화가 요구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업·농촌 각계 관련자가 생각하는 **2025년 주요 이슈**로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시대 물가대응'**이 **우선순위**로 조사됨<표1>. 특히, **농업·농촌 부문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정책 대응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10월 1일~10월 31일까지 농업인 1,328명, 도시민 1,5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후, 2024년 10월 18일~11월 12일까지 학계 전문가 150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2)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은 2023년 영국의 BBC가 소개한 신조어로 '기후(Climate)'와 '고물가(Inflation)'의 합성어임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표1> 농업농촌 각계 관련자가 생각하는 2025년 농정 주요 이슈

구분	전문가조사		농업인조사		도시민조사		가중평균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8.16	1	7.56	1	7.94	1	7.85	1
농가소득·경영안정망 확충	8.05	2	7.50	2	7.45	10	7.65	3
기후위기 시대 물가대응	7.96	3	7.25	3	7.89	3	7.66	2
농업인력 세대교체(청년 농업참여 활성화)	7.9	4	7.02	8	7.47	9	7.42	5
농촌 생활인구 및 경제 활성화	7.59	5	7.17	4	7.73	5	7.46	4
온라인 도매시장 및 산지유통 활성화	7.36	6	7.06	6	7.74	4	7.35	6
농업 스마트화 및 과학영농 실현	7.29	7	6.92	10	7.93	2	7.33	7
외국인 농업근로자 적응 지원	7.26	8	6.70	13	6.75	14	6.88	13
탄소배출 감축 노력	7.03	9	6.86	12	7.60	6	7.13	10
K-Food+ 국가수출전략산업 육성	7.01	10	6.97	9	7.58	7	7.17	9
농지보전 및 활용 논의	6.96	11	7.07	5	7.56	8	7.18	8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6.86	12	7.03	7	7.41	11	7.09	11
농업인의 영농자금 접근성 제고	6.73	13	6.88	11	7.33	12	6.97	12
농업부문 공적개발원조 고도화	5.88	14	6.54	14	7.17	13	6.53	14
개식용종식 이행 및 반려동물제도 고도화	4.54	15	4.73	15	6.62	15	5.24	15

주 1) 중요도는 10점 만점임.
2) 전문가 가중치(30%), 도시민 가중치(30%), 농업인 가중치(40%)를 적용하여 총점을 산출하였음.

<출처 : 2025년 10대 농정이슈/한국농촌경제연구원('24.12.)>

□ 주요내용

1. 기후플레이션 및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쳐온 기후변화는 폭염·폭우 등의 변칙적이고 예측되지 않는 기상현상을 발생시킴. 예측되지 않는 기상현상은 이상기후의 발생과 함께 농산물의 생산과 수급에 변동성을 일으킴

- 일례로 장마철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고 상추는 100g기준 1,996원으로 전년 대비 10.4% 상승함

○ **이상기후가 농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서민물가에 대한 직접적 위협** 때문에 **국가 차원의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불안심리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안이 필요하며, 기후환경에 적합한 농작물 품종의 연구 개발과 농업 부분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 평균기온의 상승은 농산물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작물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한국은행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온이 1℃ 높아지면, 농산물 가격은 0.4~0.5%가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는 0.07%가 상승한다고 함. 평균기온의 1℃ 상승이 유지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농산물(2%)과 소비자물가(0.74%)의 상승을 예측함

2.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확산과 식품소비 형태변화

○ 2024년 2월에 발간된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1차산업 생산력 감소와 식량안보에 관한 암울한 전망을 제시함

-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농업·어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감소가 2050년까지 10%, 2100년까지는 30%일 것으로 예측함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 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국제기구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친환경적인 식품산업에 대한 수요를 가속화함. 유럽과 북미의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생산된 식품들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

○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대체식품의 등장과 함께 '친환경' 푸드테크 기술을 개발해 옴. **대체식품과 친환경 푸드테크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에 대응할 수단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친푸드테크는 농업·어업·축산업 관련 식품산업과 4차 산업 기술의 접점으로부터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에서 혁신을 창출함. 친환경 대체식품 개발 목적은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대체식품 연구개발을 위한 생산(스마트 팜)·소비(서빙 로봇)와 유통(배달앱) 및 개인맞춤형 영양 관리 등의 분야가 발전함

○ ‘푸드업사이클링*’을 통해 더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을 생산하고, 무엇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푸드업사이클링 : 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식재료를 재가공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3. 식품 소비 형태변화에 따른 저탄소 식품의 연구개발

○ 대체식품은 단백질 공급의 수단을 식물, 곤충, 해조류, 미생물과 인공적인 배양육*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표2>. 배양기술을 통해 제조하는 **배양육**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정한 농산물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음

- 2025년에 식물성 단백질(78.9%), 곤충 단백질(13.6%), 해조류 단백질(4.9%), 미생물 단백질(0.8%), 배양육(1.7%)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2040년을 기준으로 배양육은 육류 소비의 약 35%를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92%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 배양육 : 동물세포의 줄기세포에 양분을 공급해 생산하는 식용고기를 의미함

<표2> 대체식품 유형별 장단점

구분	식물 기반 단백질	곤충 기반 단백질	해조류 기반 단백질	미생물 기반 단백질	배양육
온실가스 배출	감소	감소	매우 감소	매우 감소	매우 감소
대량생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개발 중
가격	저렴	하락세	저렴	다소 고가	고가
육류 유사도	낮음	낮음	유사	유사	매우 유사
특징	맛・식감 한계	외형 혐오감	다양한 맛・식감	다양한 맛・식감	다양한 맛・향, 식감 한계

<출처 : 딜로이트(2024)>

4. 기후플레이션에 직면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발전 전략

○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충격완화 정책 발굴이 필요함

- 품목별 시장가격과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해야 하며, 농식품의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 등 필요

○ 기후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재배 적합 작물의 발굴과 지역 선정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원료 생산방식의 재생농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 연구개발을 통한 적합 작물 발굴과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농식품 제조에 수요 되는 원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
- 도·민간 부분의 협력을 통해 비축시설의 현대화 등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푸드업사이클링 적용을 통한 폐기음식물 감소와 농업 방식의 효율성 제고

○ 기후변화는 지역 농업과 농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친환경 식품에 대한 소비 성향 증가를 고려한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함

- 점진적인 아열대 기후를 보이는 지역 현황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
- 기후플레이션 대응 전략 수립 및 저탄소 식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 적용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을 위한 **친환경 푸드테크 기술개발 및 발전**은 변화하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식품산업 관련 주체들 간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이 중요하며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검토의견

○ 지난 2024년은 겨울철 이상 고온, 폭염, 병충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시기별로 여러 품목에 다양한 양태로 수급 및 고물가 문제를 초래하였음

○ 이로인해 농가경영 위험이 가중되었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였고,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임

○ 따라서, **농산물의 선제적인 수급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생육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강화**하고 한발 앞서 **공급물량 점검 및 가격 영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물가에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집중하여 추진할 수도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전국 신규 본사업으로 진행될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과 연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함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 생계급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지원(1인가구 월4만원, 4인가구 기준 연 최대 100만원)

○ 또한, 농축산 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저탄소 프로그램의 도입·확대와 우리 도의 농업 생산 기반 점검 및 기후변화 대응 완화를 위한 안정적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가동해야 함. 현재 정부는 2026년에 운영 목표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 차원의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싱크탱크 마련 및 대응**이 필요함

<참고문헌>

은성태. (2024.12.) 이슈브리핑-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전환. 전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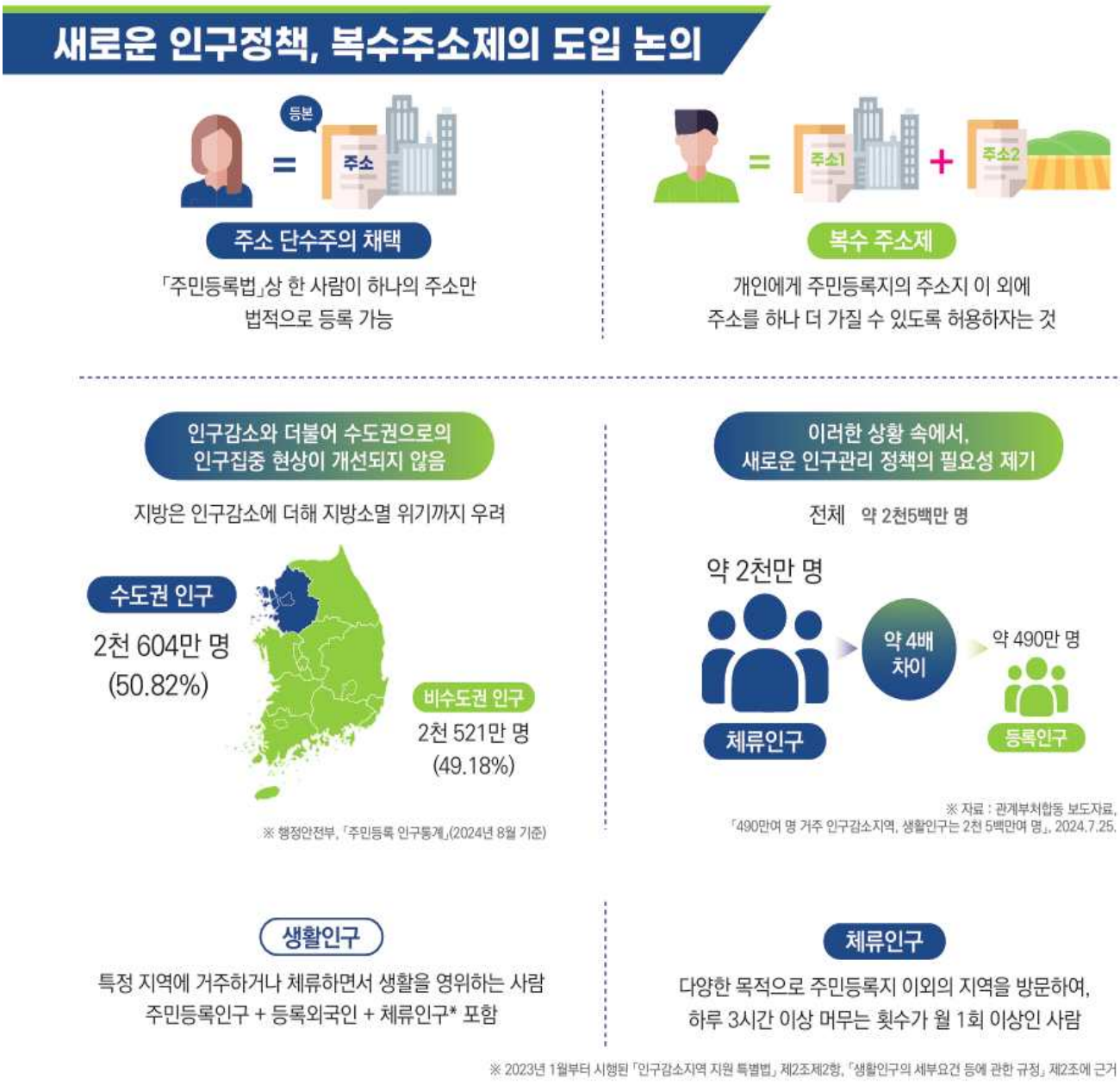
동향분석실. (2024.12.) KREI 농정포커스-2025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음.

◇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단수주소제를 운영해 왔기에, 전면적인 주소제도의 변화보다는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해 특례를 두고, 복수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이 필요함



해외 주요국 주소제도 사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주민등록 관련 법률이 있음

주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등록하고 있음




영국 프랑스

주소지 등록 관련 별도의 법률이 없음

주거지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곳의 주거지를 둘 수 있고
그 중 주거주지를 신고할 수 있음



일본

법적으로는 단수주소제를 운영

두 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촉진하는 '두 지역 거주' 정책을 추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 (2024.5)

국내 복수주소제 도입 관련 찬반 의견



찬성

생활환경 변화로 **복수 주거거점 증가**

제2주소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기여**

제2주소지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 기여**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 증가**



반대

위장전입 등 **부정적 파생효과 우려**

제2주택 구매, 토지·주택시장 불안정 야기

제2주소지 납세의무 미부과 → **지방재정 효과 미미**

실거주 주민수 변화 없음 → **지방소멸 대안으로 한계**

복수주소제 도입시 고려사항

01 적용 대상

제2주소지 **등록은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고려가능

02 신고 여부

제2주소지 신고의무제 채택 여부는 **주소지 신고의 실익**을 살펴보고 정해야 할 필요

03 권리와 의무 부여

제2주소지 신고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 등을 부여받을 경우 **최소한의 납세의무는 부과**할 필요

복수주소제 도입시 입법방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하여 **'주민등록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 고려**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단수주소제를 운영해 왔으므로,
전면적인 주소제도의 변화보다는 **복수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 필요**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15년이상 40대에게 유리. 신혼·출산가구의 주택 마련 어려움
◇ 출산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 신설 필요
◇ 자녀수에 대한 가점 확대와 직계존속 가점을 축소하는 가점제 개편 추진 필요

□ 연구배경

○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OECD 최저 수준으로, **2023년 출산율이 0.72명**에 그침.

○ 주거 안정은 출산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이 결혼 및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작용.

○ 현재 주택청약 **가점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40대 이상에게 유리**하여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기 어려움. 사회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가점제 개편 방향 논의 필요.

□ 주요내용

① 현행 가점제 현황

○ 가점제의 주요 항목

- 무주택기간 :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32점.
-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 6명 이상 시 최대 35점.
- 청약저축 가입기간 : 15년 이상 가입 시 최대 17점.

○ 민영주택 공급 감소

- 2024년 민영주택 공급물량은 119,787세대로 감소(2022년 대비 약 62% 수준)
- 가점제를 통한 공급물량은 2022년 27.2%에서 2024년 17.3%로 감소.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의 확대**가 주요 원인.

○ 당첨자 구성

- 당첨자 대부분은 **40~50대**이며,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기간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한 가구.**
- **부양가족수**가 실질적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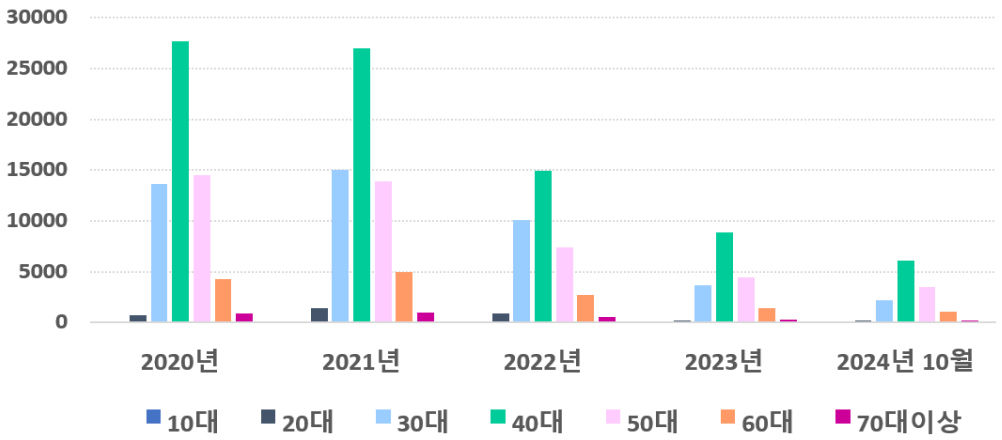
<가점제의 가점항목>

가점 항목(상한)	가점 내용
무주택기간 (32점)	• 1년미만2점, 1년이상부터1년마다2점씩가산 • 15년 이상 32점(상한)
부양가족수 (35점)	• 부양가족수 0명 5점, 1명 증가시 5점씩 가산 • 6명 이상 35점(상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17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부터 1년마다 1점씩 가산(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상한)

<가점제를 통한 민영주택 당첨자의 가점 점수>

구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		합계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2020년	24.4	10.2	31.1	17.0	15.4	5.2	62.3	47.2
2021년	23.1	9.2	31.1	16.3	15.2	5.4	61.4	44.8
2022년	22.1	7.8	30.1	12.5	15.2	5.5	58.8	39.7
2023년	23.2	9.7	29.9	14.8	15.6	6.8	60.5	45.5
2024년	24.5	11.5	30.7	17.1	16.1	7.8	63.8	49.2

<가점제를 통한 민영주택 당첨자 연령>



② 가점의 문제점

○ 젊은 세대에 불리한 구조

-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 젊은 층(20~30대)이 가점제를 통한 주택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 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 불일치

- 가점제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인구구조 및 사회적 환경이 변화**했으나, 이에 대한 반영이 부족.
- 4인 이상 가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로 기존 가점 체계의 실효성이 저하.**

○ 사회적 부작용

- 부양가족수 항목에서 직계존속과 비속이 동일한 가점 기준을 적용받아 **편법 및 부정청약 사례 발생.**
- **위장전입 등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사례**가 매년 200건 이상 적발(2024년 기준 249건)

③ 가점제 개편 방향

○ 부양가족 항목 개편

- 혼인에 대한 가점(10점)과 배우자 가점(10점) 신설.
- **자녀 1인당 가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여 출산가구를 우대.**
- 직계존속 가점을 1명당 5점에서 2.5점으로 축소.

개편안 예시

· 자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부양가족수 20점 → **(개편 후)** 혼인 10점 + 배우자 10점 + 자녀 20점(총 40점)

<가점제의 가점항목(부양가족수) 개편 예시 및 총점의 변화>

현행			
부양가족수	점수	부양가족수	점수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개편(예시)	
부양가족	점수
혼인 시	10
배우자	10
직계비속 1명	10 (상한없음)
직계존속 1명 (최대 2명)	2.5

현행	
가점항목	점수
무주택기간	32
부양가족수	20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17
총점	69

⇨

개편	
가점항목	점수
무주택기간	32
부양가족수	10(혼인) + 10(배우자) + 20(자녀 1명 10×2)=40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17
총점	89

자료: 남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24.10.28. p.51.

○ 특별공급 확대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간 혜택 중복 문제 해소.**
- 노부모 부양을 위한 특별공급은 유지하되, **일반공급에서 부양가족수 가점 축소.**

○ 경제적 형평성 강화

- 일정 자산 및 소득 기준 도입

→ **고소득·고자산 계층**이 실수요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청약에서 배제.** 중하위 소득 계층에 청약 기회 집중

- 수도권 주택의 자력 분양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추가적 정책 검토.

○ 청약저축 조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금을 국민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증진에 활용**하기 위해 안정적 자금 확보 방안 논의 필요.

④ 기대 효과

○ 출산 촉진 및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 **혼인 및 출산에 높은 가점**을 부여하여 결혼과 출산을 유도.
-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가점 상향으로 **젊은 세대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직계존속 가점 축소와 편법 행위 근절로 가점제의 공정성 제고.
- **자산 및 소득 기준 도입으로 진정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분배.**

○ 사회적 안정성 확보:

- 젊은 세대와 중하위 소득 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
- 저출산 문제 완화를 통한 장기적 사회경제적 효과.

□ 결론 / 시사점

주거 안정은 결혼과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젊은 세대와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이 필수적.

혼인, 배우자, 자녀수에 대한 가점을 신설 및 강화하여 젊은 세대의 주택 당첨 가능성을 높여 결혼과 출산을 유도,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완화와 인구구조 안정 도모

5.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모호성을 해소하고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

□ 들어가며

○ 지난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분출된 교원들의 집회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함)(2023.12.26.)이 개정됨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처벌법」**에는 **특별한 내용**들이 **신설**되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지자체장과 사법경찰관, 검사가 참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추가**됨

○ 새롭게 도입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교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2024. 5월 교원 관련 단체들의 설문조사 결과 교권 보호 5법 시행 후 변화를 못 느낀다는 교원이 67.5%였으며, 교사 80%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가 염려된다고 응답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원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을 요구하고 있음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1.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매매,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등이 포함됨

○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따른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대한 판단**을 **교육감 의견서에 적시**하여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 개정 이후 지자체와 경찰 등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사·수사하도록 변경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조사) 제2항은 지자체장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 처리 시 관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제1항과 제2항은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수사 등에 참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 그림 1 | 교육감 의견 제출 흐름도



※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24, p.71.

2. 아동학대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제외

○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제외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제3호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제외된다고 규정

○ 생활지도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이다.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였다. 「학교안전법」상 교육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등이 모두 해당

○ 종합하면, 교원이 교육활동(유치원은 돌봄활동 포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부 모호함이 남아있다. 앞으로 더 많은 시행 기간을 거치면서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교육부가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부한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2 | 교육부가 학교현장에 배부한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참고 기준'

① 법령과 학칙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제3호
- 학칙(유치원규칙) 및 그 외 관련 법령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
③ 학급 규칙 및 교육주체 간 협약
④ 교원-학부모와의 사전 협의 사항 등

※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4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24, p.72.

□ 제도 시행 이후의 성과 및 문제점

1. 제도 시행 후 실태조사 결과

○ 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대해 규정한 「교원지위법」 제17조는 2023년 9월 27일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교육감의 의견 제출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참고하도록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및 제17조의3은 2023년 12월 26일에 시행됨

○ 그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약 11개월 간의 **사안처리 결과를 전수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기간 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695건**이며,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485건(69.8%)**이다.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 10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이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함

○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종결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 불기소가 57.3%**로 가장 많고,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이 28.2%, 아동보호사건 처리가 7.9%, 기소 4.8%, 기타(기소중지 등) 1.8%**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과 검사 불기소를 합하면 85.4%(194건)이다. 이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무협의 등으로 종결된 사안 가운데 약 2.8건만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었고, 약 5.7건은 검찰로 송치된 후에 수사를 거쳐 불기소로 종결됨

| 표 3 |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한 경찰 · 검사의 결정 결과

(단위: 건)

교육감 의견제출 (A=B+C)	진행 중 (B)	종결 내역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불입건 등)	검사 결정 종결 내역				소계 (C)
			불기소	아동보호사건 처리	기소	기타 (기소중지등)	
485	258	64 (28.2%)	130 (57.3%)	18 (7.9%)	11 (4.8%)	4 (1.8%)	227 (100%)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4.12.17.

2. 성과

○ **첫째**, 제도 도입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69.8%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의 해당 교원**은 이후의 사안처리에서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상황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점

○ **둘째**, 제도 도입 이후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 85.4%가 검사 불기소 또는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로 결정되어 2018~2022년 5년 평균 53.9%에 비해 31.5%가 감소하여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경찰과 검사가 교육감의 의견을 상당한 정도로 수용**한 결과로 해석됨

○ **셋째**,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이 **외부기관의 조사·수사에 앞서서 교육청으로부터 사안조사**를 받게 됨

○ **넷째**,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됨

○ **다섯째**, 교육부는 지자체 등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가운데 **초·중·고교와 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와 비율**이 2022년의 1,702건(6.1%)에 비해 2023년에 852건(3.3%)으로 **감소**함

3. 문제점

○ **첫째,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28.2%)이 여전히 낮다.** 2023년에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한 목적에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러나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는 전문적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 **10건 중 7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해당 교원 10명 중 7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검사로의 사건송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교권 보호 5법의 취지와 최근 대법원 판례의 의미**가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작성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배부한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참고 기준'**에는 법령과 학칙,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고시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을 통해 **의견서 작성의 방향과 내용을 시·도교육청별로 잡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셋째,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교원 관련 단체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2대 국회에도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과 포괄성을 해소하려는 방안을 제시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됨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폭언, 위협" 등으로 열거하여 법률에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정서적 아동학대를 반복성·지속성과 심한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찬성** 입장이나,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이다.

□ 개선과제

1.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에 대한 경찰 단계 종결 확대

○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가 **경찰 단계의 종결 확대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제11조의2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부·경찰 협의로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조사·수사 참고 지침’ 마련

○ 제도 도입 취지가 교육감의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수사 개시 여부 판단까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경찰 등과 협의하여 가칭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조사·수사 참고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면, 교원의 신속한 교육활동 전념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3.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및 연수 실시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와 정성국의원안 등을 참고하여 “폭언, 위협, 욕설”

등을 법률에 예시적으로 열거하도록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일부라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기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정서적 아동학대 예시에 대해서도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연수할 필요가 있음

6.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대내외 여건 점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한국은행전북본부)

《 연구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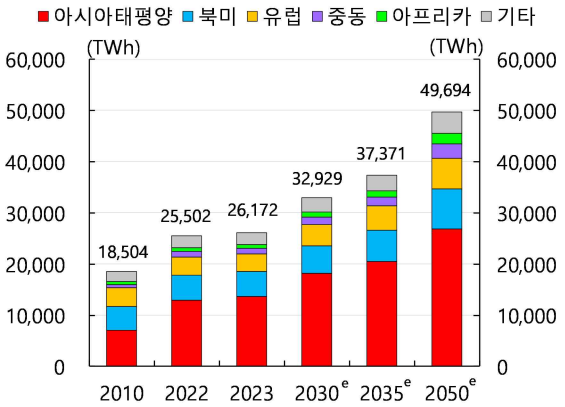
◇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월 23일 조사연구보고서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대내외 여건 점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발표

Ⅰ. 검토 배경

1.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간 주도권 경쟁 심화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까지 대두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세계는 다양한 탄소 저감 정책 등을 통해 탈탄소화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여러 국가가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직면하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보편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에너지 공급망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이러한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한 그린 수소(Green Hydrogen)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저장 용량과 시간 측면에서도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우수[3]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지리적·산업적 이점을 바탕으로 수소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2025년에는 「제2차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4]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본고는 수소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전북지역의 수소산업 여건을 점검하고, 수소산업이 전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글로벌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

<그림 1> [그림 1] 글로벌 전력 수요 전망



자료: IEA(2024)

수소가 저장 측면에서 다른에너지원에 비해 우수

<그림 2> [그림 2] 에너지 종류별 저장기술 비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IRENA(2019), SK증권

3)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여유전력을 수소로 전환해 저장하고 필요시 연료전지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환하여 활용하는 P2X(Power-to-X)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4)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에 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Ⅱ. 수소산업의 국내외 현황

1 해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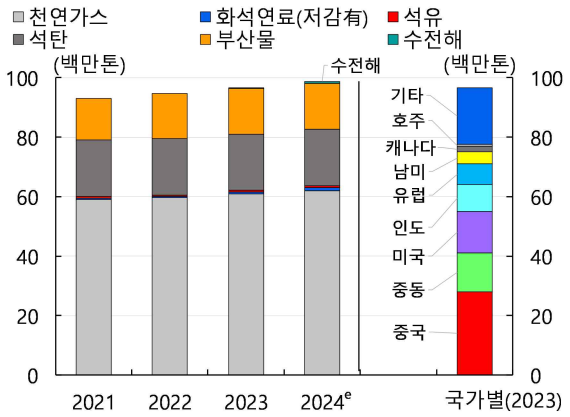
4. 글로벌 수소 생산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배출 방식[5]의 수소 생산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글로벌 수소 생산량은 약 9,700만톤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방식별로는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 방식이 전체 수소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탄소 배출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는 1% 미만에 불과하였다. 이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6] 방식으로 생산된 그린 수소는 10만톤(전체 생산의 0.1%)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5. 국가별 수소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전체의 약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미국과 중동지역이 각각 1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국가들의 수소 생산량은 대부분 천연가스 개질[7], 석탄 가스화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다.

6. 다만 최근 유럽 등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배출 방식의 수소 생산[8]이 늘어나면서 그린 수소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말 기준 수전해 설비 용량은 1.4GW로 전년대비 두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2024년말에는 5G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소 생산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수소 비중은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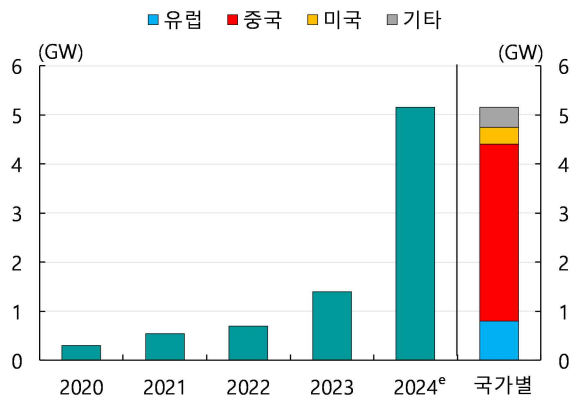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3] 수소 생산량 추이



자료: IEA(2024)

수전해 방식의 수소 생산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

<그림 2> [그림 4] 수전해 방식의 수소 생산 설비 용량



자료: IEA(2024)

5) 탄소배출 저감장치(CCUS)를 갖춘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의 생산 등 탄소배출이 없거나 낮은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low-emissions hydrogen)를 말한다.

6) 전기분해 기반의 수소 생산 방법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이다.

7) 메탄(CH_4)이 주성분인 천연가스에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주입해 순수한 수소(H_2)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수소 생산방식별 자세한 분류는 <참고1> 참조하기 바란다.

8) IEA(2024)는 현재까지 발표된 국가별 사업계획을 통해 추산해 볼 때, 2030년까지 유럽은 800만톤, 호주는 600만톤의 저탄소 수소가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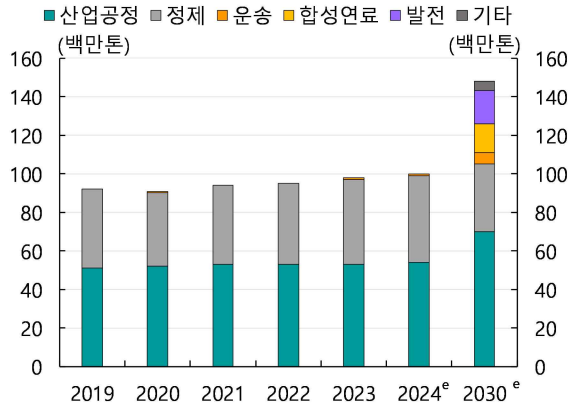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7. 분야별 수소 사용량을 보면 여전히 정유, 화학, 철강 제조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송, 중공업, 에너지 저장 등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활용되는 비중은 아직 1%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 그러나 최근에는 수소 모빌리티[9](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를 중심으로 수소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운송 분야의 수소 사용량은 2022년에 전년대비 40% 증가한데 이어 2023년에 약 55% 증가하였다. 특히 상용차 부문은 버스와 트럭의 등록대수가 각각 25%, 50%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증가율이 2022년 35%에서 2023년 15%로 크게 둔화되었다.

수소가 산업공정, 정제 등에 사용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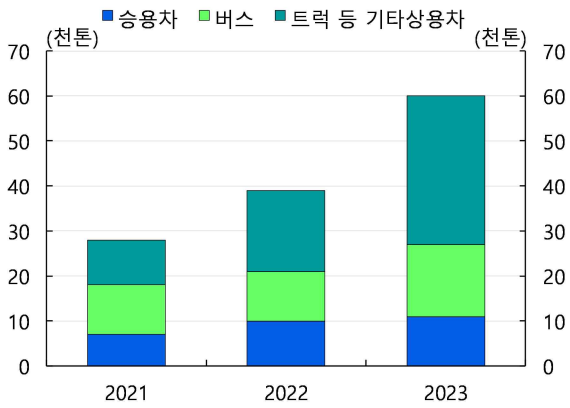
<그림 3> [그림 5] 용도별 수소 사용량 추이



자료: IEA(2024)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 소비량이 확대

<그림 4> [그림 6] 차량 유형별 수소 소비량



자료: IEA(2024)

9.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버스, 트럭 등 상용차, 한국과 일본 등은 승용차 부문에 초점을 맞춰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수소 트럭의 95%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중국[10]은 수소 트럭 부문에서 높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 수소 승용차의 경우 한국, 미국, 일본이 전체 수소 승용차의 50%, 25%, 10%를 각각 차지하여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10. 한편 전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1,200개소에 이른다. 2023년 기준 중국이 400개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280개), 한국(180개), 일본(170개)이 그 뒤를 이었다. 충전소당 차량의 비율을 보면 2024년 6월말 기준 미국이 200대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200대를 소폭 하회하며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충전소당 차량 비율이 가장 여유있는 국가는 유럽으로 50대를 밑도는 수준을 보였다.

9) 수소차의 경우 무게 대비 주행거리가 내연기관이나 전기차에 비해 월등히 길고 충전시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10) 중국이 수소 생산과 활용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경제적·산업적 성장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인 수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2023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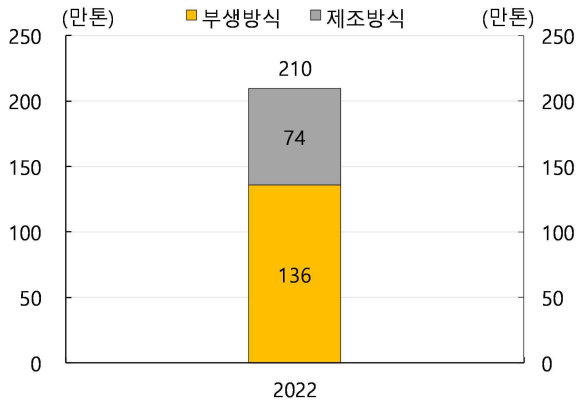
2 국 내

11. 우리나라 수소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및 정유 공정의 부산물로서 생산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수소 생산량은 210만톤으로 석유화학 및 제철공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천연가스 개질 등의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12. 지역별로 보면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38%), 전남(33%), 충남(19%)의 수소생산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수소의 대부분은 공정에 재투입되어 자체 소비되며 남은 약 10% 정도가 시중에 유통된다[11]. 전북지역의 수소 생산량은 1.8톤으로 전국의 0.8% 수준이며 주로 부생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부생수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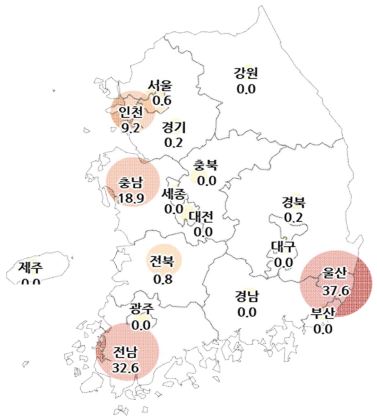
<그림 5> [그림 7] 생산방식별 국내 수소 생산량



자료: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의 수소 생산량이 90% 이상 차지

<그림 6> [그림 8] 지역별 수소 생산 비중(2022)



자료: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13. 반면 그린수소 생산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생수소를 중심으로 수소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1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수전해 기술 확보 등을 통한 그린수소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제주 등 일부 지역[12]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하였다. 다만 아직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수송 비용 등으로 그린수소의 공급단가는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13]이다.

11) 2018년 기준 국내 수소생산의 대부분은 원료로 자체 공정에 재투입되며 외부 판매량은 14%에 불과하다(2021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밸런스 구축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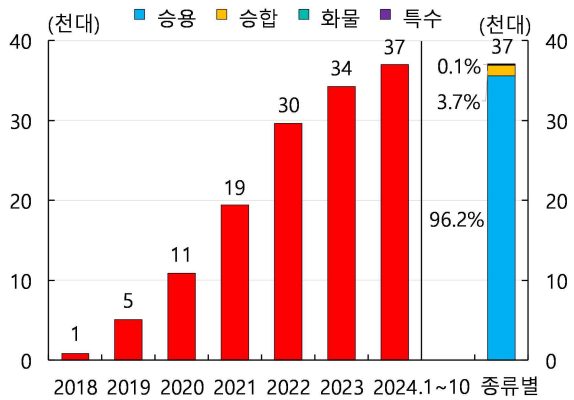
12) 제주도는 2023년 10월부터 행원 그린수소 생산기지에서 인근 풍력발전소의 생산 전력을 기반으로 하여 하루 600kg의 그린수소를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환경부는 성남시에 위치한 정수장의 수력 발전기를 활용하여 하루에 188kg의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하였다.

13) 현재 그린수소의 생산단가는 kg당 2만원대로 글로벌 생산단가(4~12달러/kg)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14. 수소의 국내 활용 분야를 보면 산업용 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 수송과 발전 분야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차, 연료전지 등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수소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였다. 2024년 10월말 기준 국내 수소차 등록대수는 3만 7천여대로 2019년 대비 7배 증가하였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나타냈다. 연료전지 발전설비 용량도 2023년 기준 1,067MW 규모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국내 수소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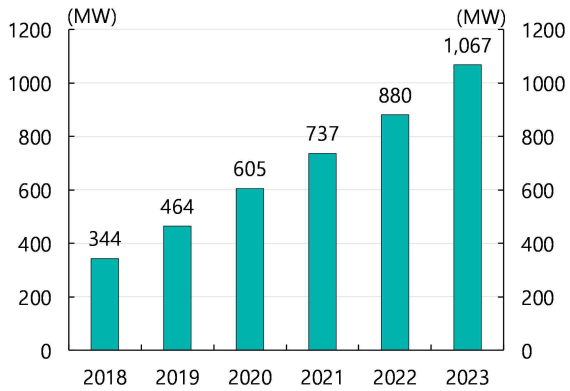
<그림 7> [그림 9] 수소차 등록대수 추이



자료: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연료전비 발전설비는 지속적으로 확대

<그림 8> [그림 10] 연료전지 발전설비 용량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5. 한편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분야별 사업체 수로 평가해보면 생산보다는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2022년말 기준)[14]에 따르면 활용 분야가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고 유통이 25.8%, 관련 서비스가 14.8%, 생산이 12.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활용 분야 중에서는 모빌리티가 전체의 19.0%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수소 공정 활용(15.1%), 연료전지(7.2%) 등이 뒤를 이었다.

16. 아울러 국내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는 특화자원에 기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항만 도시인 부산, 인천, 울산, 경기(평택) 등의 경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수소의 저장·운송 및 활용 분야에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제주, 경북(울진) 등에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기반한 그린수소 생산과 중대형 모빌리티 중심의 수소 활용 분야에 특화한 육성전략을 펼치고 있다.

14)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와 관련하여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서비스 등의 산업활동을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2023년 수소산업실태조사 보고서).

Ⅲ.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여건

1 지리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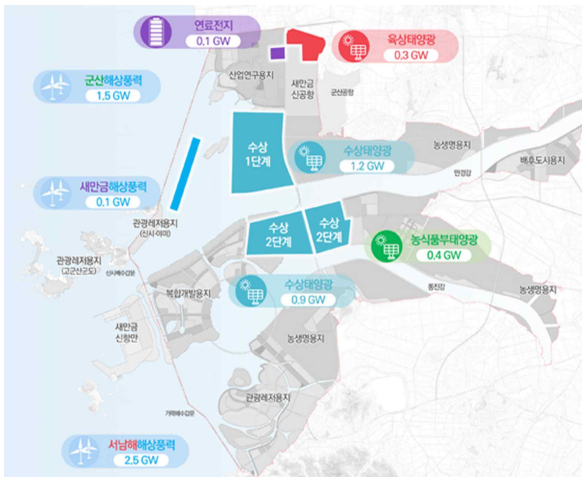
17. 전북지역은 새만금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어 그린수소 생산에 유리하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약 2.6GW)를 비롯하여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5GW), 군산 해상풍력단지(1.5GW)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구축중에 있다. 현재 전북의 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은 5.4GW 수준으로 대규모 발전단지가 완공될 경우 5GW 이상의 추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이 늘어날 경우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해지고, 수소의 생산단가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 또한 항만이 인접하여 수소의 수입 또는 수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새만금 지역에는 신항만 건설사업이 진행중이다. 새만금 신항이 향후 탄소중립항만[15]으로 지정될 경우 전북지역이 수소를 생산 또는 수입한 후 이를 수요처로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항만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발전단지와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현재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 있어 2030년 이후 조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군산 해상풍력단지는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은 2026년에 2선석을 개항한 후 배후부지 설계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새만금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이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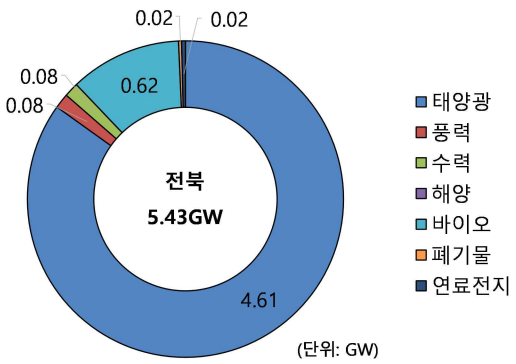
<그림 9> [그림 11]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현황



자료: 새만금개발청

현재 전북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량은 5.4GW

<그림 10> [그림 12] 신재생에너지별 보급 용량(2023년)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연구원

15)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항만'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수소,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안전하게 수입, 보관, 가공할 수 있는 항만을 말한다.

2 산업적 여건

20. 전북지역은 수소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다. **생산** 분야에서는 알카라인 수전해 설비 제조 업체인 아헤스가 대표적이다. 동 업체는 대용량·고효율의 수전해 설비를 개발하여 2023년 12월 국내 최초로 수전해 설비 수출에 성공하였다. **저장** 분야에서는 수소차의 핵심부품인 차량용 연료탱크와 튜브트레일러를 생산하는 일진하이솔루스, 저장용기의 원재료인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효성첨단소재 등이 전북에 소재하고 있다. **활용** 분야에서는 대표적 수소차 생산 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신모델을 출시[16]하며 수소 상용모빌리티 특화 생산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산하이엑시움모터스가 군산공장으로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중 수소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21. 2023년 3월에는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수소산업 육성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경우 총 2,562억원이 투자되어 1.6km^2(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기존 완주 산업단지 인접지에 2027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동 선정으로 여러 수소 관련 기업이 추가적으로 전북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 아울러 전북에는 수소 기업을 위한 시험, 인증, 연구 센터 등 지원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다. 2024년 5월에는 부안군에 국내 최초의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착공되어 향후 충전소, 연구시설 등에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완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수소저장용기시험센터,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 특화센터 등이 구축되고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입지

<그림 11> [표 1] 전북 소재 수소 관련 주요 기업

분야	업체	위치	주요 생산품
생산	아헤스	완주	P2G 수전해 설비
저장	일진하이솔루스	완주	수소저장용기(탄소소재)
	플라스틱옴니엄	완주	수소저장용기
	덕산에테르시티	부안	수소저장용기(충전소용)
	효성첨단소재	전주	수소저장용기(탄소섬유)
활용	현대자동차	완주	수소트럭, 수소버스
	두산하이엑시움모터스	군산	수소버스
	가온셀	완주	수소 지게차
	두산퓨얼셀	익산	연료전지
	비나텍	완주	연료전지 소재

자료: 전북연구원, 각 업체별 홈페이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소 관련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중

<그림 12> [그림 13]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청

16)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2019~),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2022~), 수소고속버스 유니버스(2023~) 등이 출시되었다.

3 제도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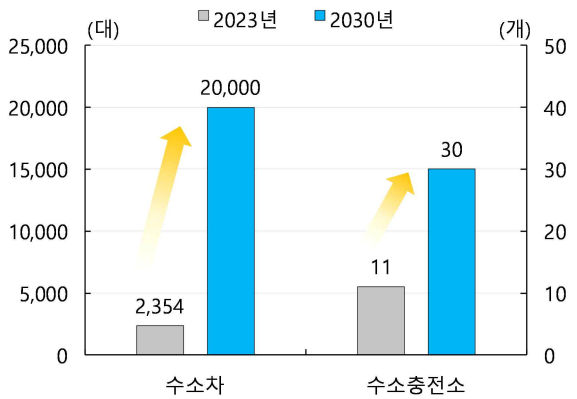
23.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하다. 2024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은 산업, 재정 등의 부문에서 자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12월에 시행된 전북특별법은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333개의 특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 권한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전북은 향후 이를 통해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 전북의 수소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4. 또한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통해 도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북의 수소 승용차 및 승합차 보조금 지원대수는 585대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지원금액도 1대당 3,450만원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수소차와 충전소의 보급을 각각 20,000대,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25. 이에 더해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수소 전문 인력 양성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관련 기업들에게 지원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인프라', '자금'에 이어 '전문인력'이 3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17].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수소에너지고등학교를 개교하고 수소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내 주요 대학에서는 수소 관련 학과[18]가 설치되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수소차 2만대, 충전소 30개소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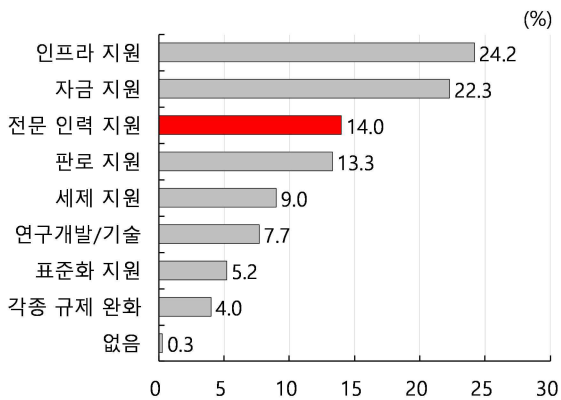
<그림 13> [그림 14] 전북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계획



자료: 전북특별자치도(2024.2)

수소산업 지원 필요 분야 중 전문인력 지원이 3순위 차지

<그림 14> [그림 15] 수소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 분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

17) 수소 전문인력 확충방안으로는 '특성화고, 환경관련 학과, 교육과정 등 신설 및 개편'이 26.0%로 1순위를 차지하였다(2023년 수소산업실태조사).

18) 우석대학교에는 2025년부터 수소모빌리티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전북대학교 '수소에너지융복합 기술혁신 인재양성사업단', 군산대학교 'RIS에너지신산업사업단' 등의 수소 인력 양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Ⅳ.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산업연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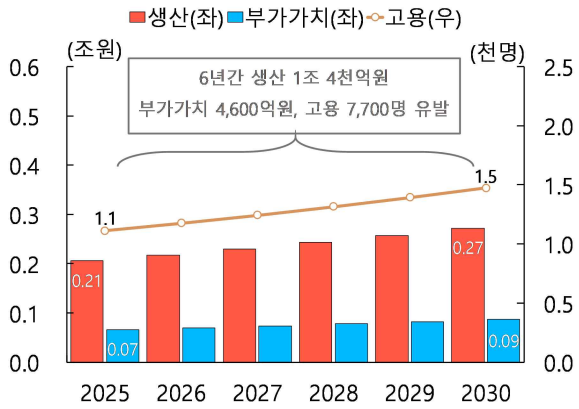
26. 본절에서는 지역산업연관표(2015)[19] 및 수소산업실태조사(2023) 자료를 이용하여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20]. 동 자료를 통해 2025년 전북지역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액 규모를 1,700억원[21]으로 설정하였으며, IEA(2024)의 글로벌 수소경제 전망에 따라 2030년까지 연평균 5.8%[22]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7. 전북지역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가 향후 6년(2025~2030) 동안 1조 2천억원 발생할 경우, 역내에 생산 1조 4천억원과 부가가치 4,600억원이 유발되며 7,7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5년 역내 유발효과는 생산 2,100억원, 부가가치 700억원, 고용 1,1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GRDP(64조 2,000억원, 2023년)의 약 0.3%(생산 기준) 수준이며, 2030년에는 0.4%(2,700억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28. 또한 동기간 전국에 대한 유발효과는 생산 2조 4천억원 및 부가가치 7,900억원 수준이며, 11,6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에 생산 3,400억원, 부가가치 1,100억원, 고용 1,700명을 유발시키는데, 동 효과가 2030년에는 생산 4,500억원, 부가가치 1,500억원, 고용 2,200명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5~2030년간 역내에 생산 1조 4천억원, 부가가치 4,600억원, 고용 7,700명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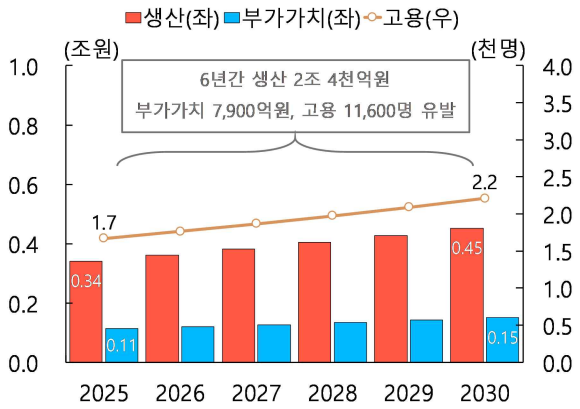
<그림 15> [그림 16] 전북 수소산업의 역내 파급효과



자료: 저자 시산

동기간 전국에는 생산 2조 4천억원, 부가가치 7,900억원, 고용 11,600명 유발

<그림 16> [그림 17] 전북 수소산업의 전국 파급효과



자료: 저자 시산

19)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별로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여 지역간 및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 통계표이다. 지역산업연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2>를 확인하길 바란다.

20)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3>을 확인하길 바란다.

21) 전북 수소산업 관련 자료 부재로 전국 수소기업의 투자규모 4.1조원(2022년)과 전북 수소기업 비중 3.4%(96개)를 활용하여, 2022년 전북지역 수소기업의 투자액을 0.14조원으로 가정하였다. 이후 IEA(2024)의 글로벌 전망(연평균 성장률 5.8%)을 토대로 2025년 투자액 규모를 0.17조원으로 산정하였다.

22) 국내 수소산업(매출액·투자액 등)에 대한 전망자료 부재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수소경제 성장 전망치를 활용하였다.

2 지역별 ·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29.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지역별(전북 외) 생산유발효과(2025~2030년)는 경기·서울·경북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 산업(2025~2030년)은 경기 1,600억원, 서울 1,300억원, 경북 1,100억원 등의 생산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북지역 수소산업이 경기·경북지역의 자동차 관련 산업(자동차·자동차부품·특장차·트레일러 등), 서울지역의 기계장비[23] 산업 등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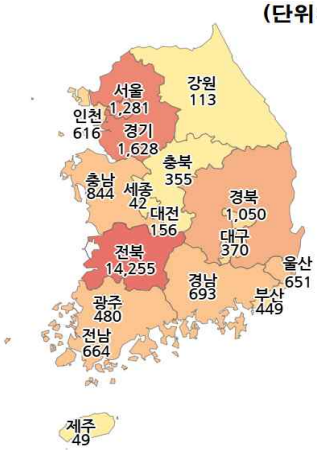
30. 또한 동 산업은 전국의 기계장비, 운송장비 산업 등과 전후방[24] 연계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수소산업의 전방산업으로 기계장비(0.431, 생산유발계수), 운송장비(0.311), 운송서비스(0.136) 등이, 후방산업으로는 기계장비(0.415), 운송장비(0.293), 금속가공제품(0.189) 등이 비교적 큰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결과는 운송장비[25] 및 기계장비[26]에 포함되는 일반목적용 기계(공기·액체조절장치 등)와 자동차·선박 관련 산업 등이 전북지역 수소산업과 연관성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 수소산업의 역외 생산유발효과는 경기 · 서울 · 경북순

<그림 17> [그림 18] 전북 수소산업의

<그림 18> 2025~2030년간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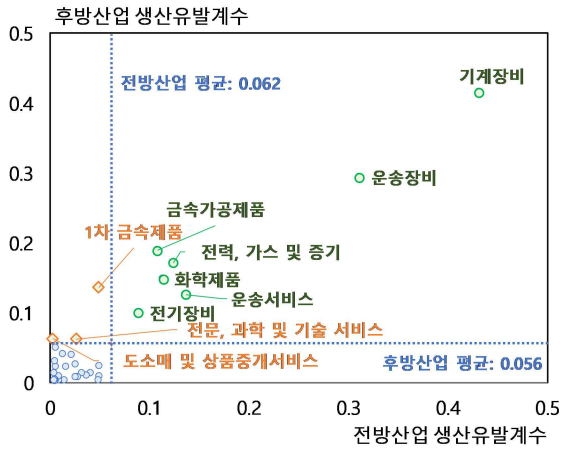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시산

전북 수소산업과 전국의 기계 · 운송 장비 등이 전후방 연관수준이 높게 나타남

<그림 19> [표 19] 전북 수소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



자료: 저자 시산

23) 특히 서울지역 기계장비 품목중 공기 및 액체 조절장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공기 및 액체 조절장치는 에어컨, 공기조절장치, 산업용 냉동 · 냉장 장비, 액체여과청정기(하수정화장비 · 상수도용여과기 등) 등을 포함한다.

24) 수소산업이 A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면 A 산업은 수소산업의 전방산업(down-stream)이 되며, B 산업이 수소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면 B 산업은 수소산업의 후방산업(up-stream)으로 정의된다.

25) 전북지역 수소산업과 후방으로 연관된 운송장비 산업은 자동차부품 산업 등이며 전방으로 연관된 운송장비 산업은 자동차 산업 등이 있다.

26) 후방으로 연관된 기계장비 산업은 펌프 및 압축기 등이며 전방으로는 연관된 기계장비 산업은 내연기관 및 터빈 산업 등이 있다.

3 시나리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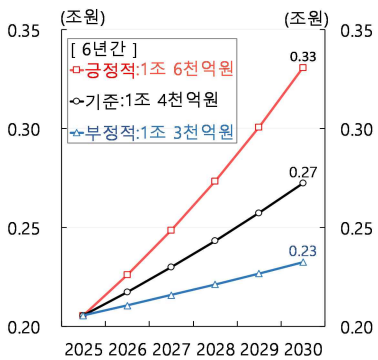
31. 본고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다양한 성장경로(긍정적, 부정적)를 고려하여, 향후 전북지역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가 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긍정적 시나리오는 완주 국가수소산업단지 최종 선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기 완공 등 우호적 산업환경 조성에 따라 수소산업의 투자액이 연평균 10%[27](기존 5.8%)씩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부정적 시나리오에서는 수소산업 성장세 및 투자 둔화, 높은 생산단가 유지 등 비우호적 산업환경으로 동 투자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2.5%[28]인 경우로 설정하였다[29].

32. 긍정적 시나리오에서 수소산업 투자(2025~2030년간 1조 3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1조 6천억원, 부가가치 5,100억원, 고용 8,60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 시나리오에서 유발효과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11.2%(생산 +1,600억원, 부가가치 +500억원, 고용 +900명) 증가하였다. 또한 2030년 전에 새만금 신항이 조기 활성화된다면 동 유발효과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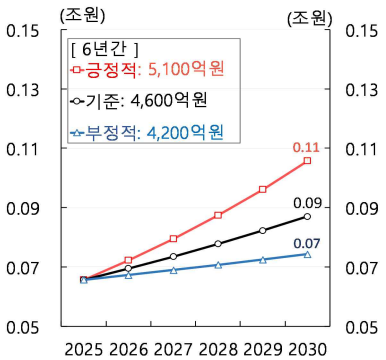
33. 한편 부정적 시나리오(2025~2030년간 1조 1천억원)에서는 생산 1조 3천억원, 부가가치 4,200억원, 고용 7,100명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동 시나리오에서 유발효과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약 8.0%(생산 -1,100억원, 부가가치 -400억원, 고용 -600명)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전북지역내 수소기업의 집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새만금 탄소중립 항만 지정 지연 등 비우호적 산업환경이 조성된다면, 동 유발효과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시나리오에서 역내 유발효과(2025~2030년)는 기준 대비 생산 1,600억원, 부가가치 500억원, 고용 900명 만큼 증가하였으나, 부정적에서는 기준 대비 생산 1,100억원, 부가가치 400억원, 고용 600명 만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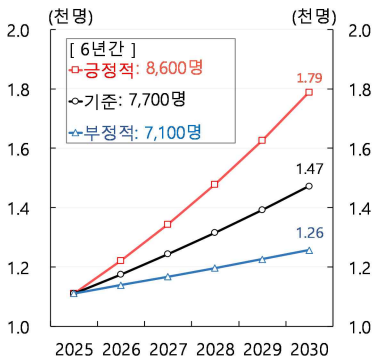
<그림 20> [그림 20] 생산 유발효과



<그림 21> [그림 21]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림 22> [그림 22] 고용 유발효과



자료: 저자 시산

27) 수소 생산량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적 높게 전망했던 KPMG(2021)의 전망치(10%)를 사용하였다.

28) 과거(2023년) 수준의 수소생산량 성장률(전년대비 2.5%)을 이용하였다(IEA, 2024).

29) 전북지역 수소산업은 전문기업, 전후방 기업 등 산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향후 집적경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글로벌 수소시장 및 지자체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성장 및 민간투자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전북연구원, 2024).

Ⅴ. 종합평가 및 시사점

34. 전북지역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대내외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에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향후 새만금 신항이 건설될 경우, 역내에 비교적 낮은 운송비용으로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내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서비스(시험·인증·연구센터 등) 관련 다양한 수소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집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5. 한편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2025~2030년)가 1조 2천억원 발생할 경우 전북 지역내 유발효과는 생산 1조 4천억원, 부가가치 4,600억원, 고용 7,70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 수소산업에 대한 산업환경이 우호적이라면 동 유발효과는 생산 1조 6천억원(+1,600억원), 부가가치 5,100억원(+500억원), 고용 8,600명(+9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비우호적 산업환경이 조성된다면 동 효과는 생산 1조 3천억원(-1,100억원), 부가가치 4,200억원(-400억원), 고용 7,100명(-600명)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집적과 산업성장을 위한 꾸준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36. 구체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우위 산업인 수소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수소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가 우수하며, 지원센터·충전소 등 인프라도 다수 구축되어 있다. 또한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지에 지정(2023.3월)되면서 향후 다수의 수소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내 유관기관은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전후방 밸류체인(생산·저장·운송·활용·서비스 등)을 구축하여 집적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제 혜택[30]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역내에 수소 모빌리티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37.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역내 수소산업의 집적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소 생산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은 수소생산 관련 기업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적효과를 발생시키는 밸류체인을 형성하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다만 향후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 등)가 충분히 형성된다면 수소 생산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관련 기업이 더욱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수소 생산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 예를 들어 전북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방한 외래 관광객 지방 관광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요약 ››

◇ 지방시대 정책 기조 변화 등 정책 환경 및 방한 관광 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한 외래 관광객의 지방 관광 실태분석 및 주요 이슈 진단 등을 토대로 외래 관광객 지방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체계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방정부는 방한 외래 관광객의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는 있으나, 방한 외래 관광객의 서울 중심의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방한 외래 관광객 지방 관광 활성화는 관광정책 영역을 넘어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 및 글로벌 목적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확충을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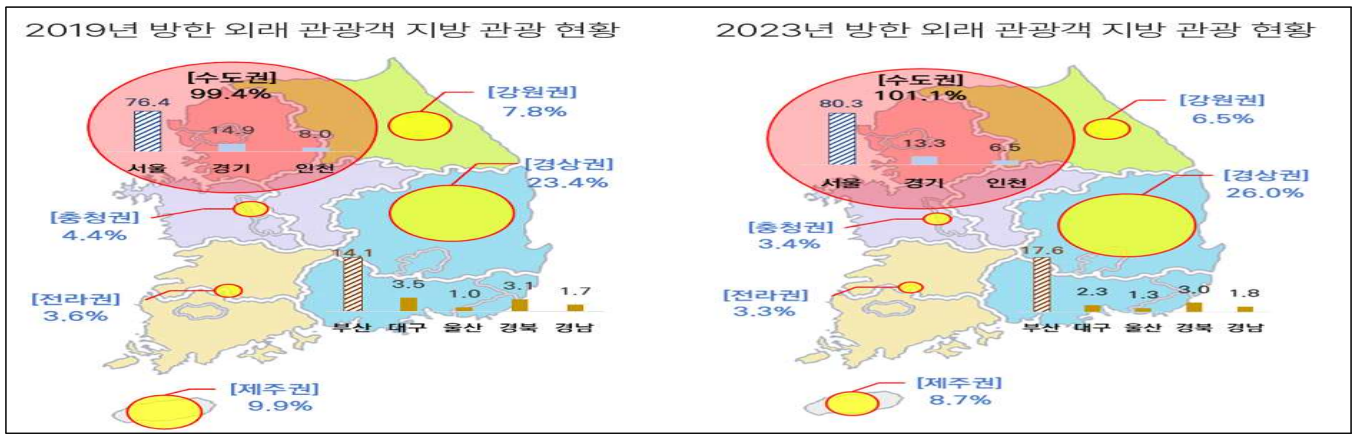
○ 이에 지방 관광 실태분석 및 주요 이슈 진단을 통해 지방 관광 활성화 정책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방한 외래 관광객 지방 관광 실태분석

○ 방한 외래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3년 기준 방한 외래 관광객의 수도권 방문율이 101.1%를 보이는 반면, 지방 방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47.9%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경상권을 제외한 지방 권역의 방문율은 10% 미만으로 분석되어 외래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그림 1 > '19년 대비 23년 방한 외래 관광객 지방 방문율 변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 외래 관광객 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 방한 외래 관광객 중 지방을 방문하는 지방 방문 외래 관광객의 평균 숙박 일수와 소비 지출액 모두 수도권만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대비 높은 수치를 보임

○ 지방 방문 외래 관광객의 평균 숙박 일수는 10.0일로 방한 외래 관광객 평균 숙박 일수 7.8일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소비 지출액은 1,831.8달러로 1,513.3달러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는 지방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이 지방을 방문하지 않는 외래관광객과 비교하여 체류 기간이 길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표 1 > '23년 방한 외래관광객 대비 지방 방문 외래관광객 권역별 평균 숙박일수

(n=16,196) (단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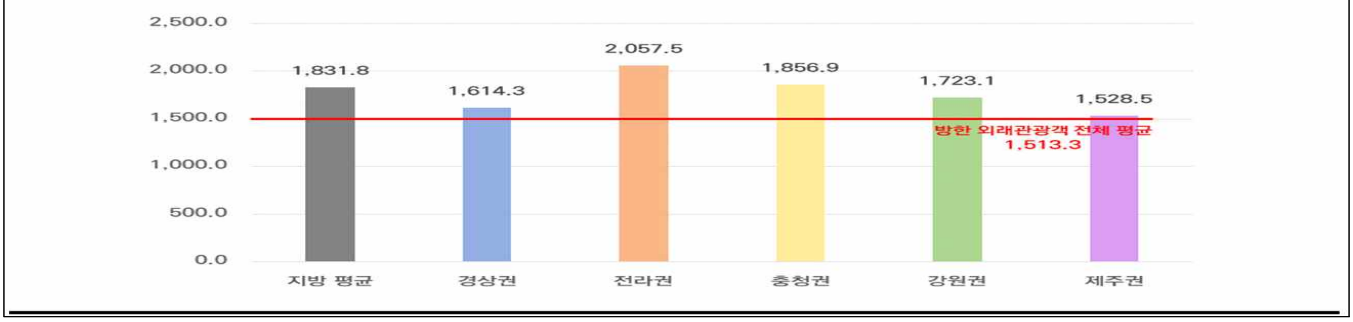
방한 외래관광객	지방 방문 외래관광객					
	지방 평균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7.8	10.0	9.2	12.6	12.7	8.2	8.2



< 표 2 > '23년 방한 외래관광객 대비 지방 방문 외래관광객 권역별 평균 지출액

(n=16,196) (단위: 달러)

방한 외래관광객	지방 방문 외래관광객					
	지방 평균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1,513.3	1,831.8	1,614.3	2,057.5	1,856.9	1,723.1	1,528.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 외래 관광객 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 또한, 방한 외래관광객의 주요 입국 경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수도권 소재 국제공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 '23년 기준 외래관광객의 수도권 소재 국제공항 입국 비율은 80.5%로 '19년 73.4%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지방 소재 국제공항 입국 비율은 12.4%로 이는 '19년 15.8% 대비 감소한 것으로 앞서 제시한 방한 외래관광객 수도권 편중 현상이 국제공항 이용 입국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남

○ 외래관광객의 경우 수도권 방문 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으로 권역 간 이동 시 고속철도를 주로 활용하여 이동하고 있음

○ 특히 수도권에서 고속철도를 활용하여 지방 권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30%를 상회하고, 이러한 결과는 지방과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와 고속철도 역을 연결하여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고속철도와 연계한 지방 관광 패키지 또는 상품을 개발하고, 지방 교통망의 외국어 안내를 개선하는 등 교통과 연계한 수용 태세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외래 관광객의 열차 승차권 구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외래 관광객의 방문율을 살펴본 결과, '23년 기준 외래 관광객의 승차권 구매 건수는 총 644,538건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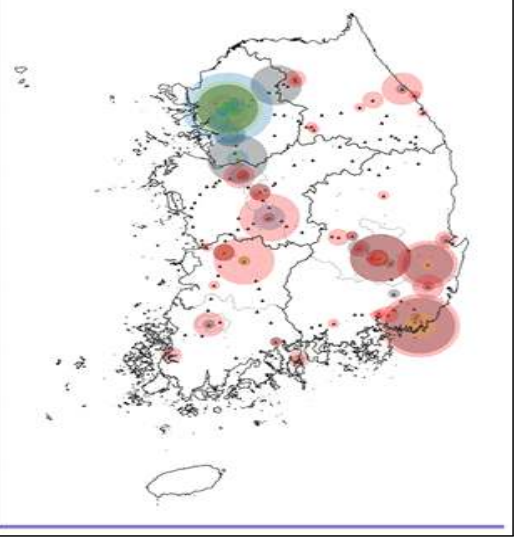
○ 승차권 도착지 기준으로 수도권 방문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상권 39.5%, 충청권 6.6%, 전라권 5.0%, 강원권 2.9% 순으로, 열차를 활용하여 권역 간 이동을 하는 외래 관광객은 수도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강원권과 충청권, 전라권 등으로 방한 외래 관광객 분산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표 3 > '23년 열차 이용 외래관광객 이동 경로

(n=644,538) (단위: %)

구분	수도권	경상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일본	44.9	31.7	4.4	10.5	8.4
중화권	46.4	37.5	8.2	3.8	4.0
동남아시아	50.6	38.2	3.0	4.4	3.9
기타 아시아	42.2	42.1	2.2	8.1	5.4
구미주	45.0	40.8	1.9	6.9	5.3
중동	42.2	39.0	1.8	13.2	3.9
아프리카	35.7	35.3	3.2	19.6	6.2
전체	46.0	39.5	2.9	6.6	5.0



출처: 코레일 내부 자료('23년 기준 외국인 열차 승차권 구매 내역)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 방한 외래 관광객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제안

○ 방한 외래 관광객의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방의 인바운드 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방 관광 목적지 육성

② 지방 관광 수용 태세 확충

③ 민간 중심의 인바운드 생태계 조성

④ 지방 관광 목적지 인지도 제고

⑤ 지방 인바운드 관광 분석체계 마련

○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는 법, 조직,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자체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 지방의 인바운드 관광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를 제시함에 있어 세 가지 측면에서 과제를 도출함

- 첫째, 지방의 인바운드 관광 경쟁력 강화

· 인바운드 관광 경쟁력이란 외래 관광객의 관광 활동에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 쇼핑, 안내 등 관광의 필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외래 관광객의 관점에서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공급 체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관광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정책 추진 체계의 전환

· 관광 정책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방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조직 및 계획 체계를 인바운드 관광 특히 지방의 외래관광객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 관광 활성화의 관점에서 현행「관광진흥법」 개정과「지역관광진흥법(가칭)」 제정, 지방시대에 맞는 지역관광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관광계획체계 정립이 필요함

- 셋째, 지방 중심의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
  · 지방시대의 전환에 따라 지역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 관광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현 상황에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으로 숙박세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및 지역별 대기 격차 해소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 2024.10.) -

가. 현 황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인건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74억 3,300만원 증액된 639억 5,300만원 편성되었다.

○ 2017년 행안부-복지부 공동 공모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10개소)'를 실시 후,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초 설치된 2018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센터가 증가하였으며, '23년 12월 말 신고·운영 중인 전국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1,084개소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조사, '24.12.발표>

[표 1] 다함께돌봄센터 연도별 설치 현황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17	173	424	694	903	1,048
서울	2	60	128	201	235	254
부산	1	8	28	42	51	63
대구	1	1	2	4	7	13
인천	1	4	12	21	27	31
광주	-	2	3	14	21	29
대전	-	2	5	10	23	30
울산	1	6	16	22	26	28
세종	1	3	5	6	7	8
경기	1	30	86	174	241	291
강원	-	11	18	25	34	37
충북	1	9	19	23	32	34
충남	3	4	18	30	41	42
전북	1	12	26	40	46	49
전남	2	7	15	20	27	35
경북	-	7	26	38	54	67
경남	2	7	16	22	26	31
제주	-	-	1	2	5	6

나. 분석의견

○ 첫째,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업**에서 **재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정부는 지역 내 초등 방과 후 돌봄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기반 돌봄기관의 하나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있음

- 정부의 계획은 2024년까지 누적 1,906개소의 센터를 확충·운영하는 것이나, '19년~'24년까지 계획(1,906개) 대비 실제 설치 실적(1,102개)은 약 58% 수준임

- 계획대비 설치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의 실집행률도 2021년 54%, 2022년 52%, 2023년 75%로 높지 않게 나타남

[2021~2024년도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사업 예산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집행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 (B/A)
다함께 돌봄 센터	2021	39,653	36,272	21,472	54%
	2022	46,871	36,692	24,576	52%
	2023	55,373	55,373	41,612	75%
	2024.7.	57,664	37,176	32,945	57%

자료: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의 연도별 이월재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이월 및 재이월금이 발생함. 2023년도에는 이월금액이 50억 5,100만원 발생하였고, 재이월금액도 11억 7,800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유휴공간이 부족하고, 사업 특성상 센터의 설계착공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설계용역 지연, 행정절차 등에 따른 착공 지연 등으로 이월 재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전북의 경우 2023년 재이월액은 145백만원으로 준공시기 지연의 사유를 들음

[연도별 이월·재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명	2021년			2022년			2023년		
	개소수	이월액	재이월액	개소수	이월액	재이월액	개소수	이월액	재이월액
서울	201	1,141	629	233	633	293	254	712	70
부산	42	180	-	51	330	39	63	506	130
대구	4	45	-	6	-	-	13	100	-
인천	21	65	-	23	151	46	31	270	-
광주	14	322	156	21	364	69	29	266	52
대전	10	223	-	23	109	45	30	50	90
울산	22	45	-	26	50	-	28	95	-
세종	6	-	-	7	41	-	8	30	-
경기	174	658	184	233	985	99	291	1,337	414
강원	25	165	14	33	95	-	37	371	-
충북	23	273	-	32	237	-	34	245	-
충남	30	167	42	40	140	45	42	404	-
전북	40	131	-	44	132	-	49	145	-
전남	20	132	48	27	318	38	35	194	107
경북	38	630	9	51	232	-	67	255	100
경남	22	105	30	26	105	-	31	71	70
제주	2	-	-	5	-	-	6	-	-
계	692	4,282	1,112	876	3,922	674	1,042	5,051	1,178

주: 2023년 재이월액은 2024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2025년으로 재이월될 금액의 예상 수치이므로 향후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자율계정 사업이더라도, 세부적인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월·재이월되는 규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다함께돌봄센터 대기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대기 격차 해소 및 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초등학교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동 사업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교육부) 늘봄학교 사업 등이 있음
- 기존의 돌봄정책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됨에 따라,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부처별 돌봄서비스를 통합관리체계로 개편하여 서비스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의 지역별 대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7월말 기준으로 대기가 없는 곳(대구)부터 3,252명인 곳(경기)까지 지역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대기를 포기한 대기포기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대기아동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전북 대기 아동수 95명)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늘봄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등 공적기관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각 지역별 수요 및 수요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검토를 실시하고, 공적돌봄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함

[다함께 돌봄센터의 지역별 대기 현황]

(단위: 명)

구분	대기아동('24.7월말 기준)
전체	7,484
서울	1,465
부산	319
대구	0
인천	332
광주	93
대전	339
울산	119
세종	141
경기	3,252
강원	376
충북	151
충남	191
전북	95
전남	28
경북	500
경남	47
제주	36

자료: 보건복지부

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 한시적 소액지원의 사업 목적 및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도 예산 분석 / 2024.10.) -

가. 현 황

○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매출 확대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료(이하 택배비를 포함함)의 일부를 한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편성된 계획액은 총 2,037억원이다.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며, 보조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2025회계연도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계획(A)	2025 계획안(B)	증감	
				B-A	(B-A)/A
소상공인성장지원	141,654	294,625	265,485	△29,140	△9.9
소상공인역량강화	21,042	21,542	240,674	219,132	1,017.2
배달·택배비 지원	-	-	203,700	순증	순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본 사업은 현재 활동 중인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배달(택배 포함)을 활용하는 주요 업종(제조, 도소매, 음식, 정보통신) 종사자 67만 9,000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최대 3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사업 중 실제 부담한 배달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사업기관에서 지원액을 직접 소상공인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원단가 30만원은 최대 한도액이며, 실제 배달료 지출액이 30만원에 미달할 경우, 해당 지출액 만큼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개요]

○ (지원대상) 활동기업 중 매출액 연 1.04억원 미만(간이과세제도 적용기준 매출) 이하 배달(택배 포함)을 활용하는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유흥업, 부동산 관련업 등) 제외 *주요 업종은 주로 제조, 도소매, 음식, 정보통신업 등을 가리킴
○ (지원방법)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료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소상공인 명의 계좌에 직접 지급
○ (지 원 액)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30만원 중 실제 부담한 배달료
○ (소요예산) 2,037억원(총 67.9만명 대상)
○ (사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원대상인 67.9만명은 과세자료를 통해 파악한 전체 소상공인 733만여 명 중 유흥업이나 부동산 관련업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과 연 매출 1.0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여기에 음식업·도소매업의 평균적인 배달판매 경험률(약 42%)를 곱하여 도출된 수치이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상수요 산출 근거]

○ (전체 소상공인)	7,335,397개
→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비활동기업 제외)	5,337,186개
→ (연 매출 1.04억원 미만 업체)	3,097,282개
→ (배달활용 주요업종: 제조, 도소매, 음식, 정보통신)	1,616,672개
→ (평균 배달 활용경험률 42% 반영)	679,001개
○ 평균 배달 활용경험률은 「2022 서비스업 실태조사(통계청)」에 따른 음식업 및 도소매업 중 배달(택배) 판매경험 비중을 반영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 **첫째, 본 사업은 현재와 같은 소수 배달플랫폼 집중 체제에서 배달수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 혜택이 배달플랫폼에 상당 부분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업의 증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7월 3일, 정부는 2025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신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후 같은 달 10일 국내 배달플랫폼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배달의 민족'이 자체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인해 주문금액에 따라 평균 0~7.9% 가량 배달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입장이다. 비록 업주부담 배달비 자체는 인상되지 않지만, 배달앱 이용시 업주는 주문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중개이용료를 개별 배달 건마다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중개이용료가 기존 6.8%에서 9.8%로 인상됨에 따라 전체 배달수수료 역시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현재 우리나라의 배달플랫폼 시장은 상위 3개사가 96% 이상을 차지하고 사실상의 가격설정력을 가진 집중 체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업이 추가로 배달수수료의 인상을 유발할 경우, 지원 혜택의 상당 부분은 배달플랫폼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요금제 인상 전후 배달수수료 비교 예시(2024.7.)]

(단위: 원, %)

구분		중개이용료	업주부담 배달비	결제정산이용료	부가가치세	계
인상 전(A)		1,700	3,200	750	565	6,215
	(전체 대비 비중)	(27.4)	(51.5)	(12.1)	(9.1)	(100.0)
인상 후(B)		2,450	2,900	750	610	6,710
	(전체 대비 비중)	(36.5)	(43.2)	(11.2)	(9.1)	(100.0)
변동	금액(B-A)	750	△300	-	45	495
	비율[(B-A)/A]	44.12	△9.38	-	7.96	**7.96**

주: 주문금액 25,000원, 배민1플러스 요금제, 서울지역 기준

자료: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자체 제공 ; 뉴시스, "배달의민족 - '업주수수료 44% 인상'은 과장된 주장... 배달비 인하 감안해야", 2024.7.15. 인터넷판에서 재인용

○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관련 협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배달플랫폼 이용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금년도 7월 23일에 출범하였다. 특히 본 상생협의체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말 현재까지 5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나, 배달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업계 자체의 노력과 부과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이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구성 방안]

◈ 참석자(분야별 4인씩 총 16명)
-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 ㅇ (공익위원) 교수 2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 향후 논의계획
- ㅇ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ㅇ 배달업계 불공정관행 개선
- ㅇ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 ㅇ 기타 제도적 대책 마련 및 애로사항 해소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 출범식 개최", 2024.7.23.

○ 둘째, 정부는 전기요금 지원이나 배달·택배비 지원과 같은 한시적 소액 지원 방식의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향후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520억원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다만, 본 사업은 최근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 지원하는 사업이나, 9월 말 현재 편성된 예산의 54.3%인 1,370억원이 실집행되어 지원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2024년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개요]

○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약 126만명 추정)
*당초 3천만원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 (지원단가) 사업자 당 20만원 한도
○ (추진체계) ① (소상공인)한전·소진공에 요금차감 신청 → ② (소진공)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한전 통보 → ③ (한전)고지서상 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청구내역에 전기요금 차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0,000 등) 별도 표기
○ (제출서류) ①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매출액), ② 사업자등록증(검증용)
○ 추진일정 : 공고(1월 말) → 접수 및 지원 개시(2월)
○ 2024년 예산액 : 2,520억원
○ 실집행 현황(실집행률) : 9월말 현재 1,370억원(54.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2024년도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2025년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다수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일정액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해당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체감하는 지원효과가 클 수 있고,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절차가 없어 행정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긍정적 측면이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의 목적은 제한된 예산 하에서 소상공인의 자립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당 지원방식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한시적 지원의 특성상 지원대상이 전기료, 배달비용 등으로 해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대상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지원혜택의 크기 대비 신청·선정 과정에서의 행정부담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실증적 사례를 통한 면밀한 사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4.10.) –

가. 현 황

○ 풍수해 및 지진재해보험사업은 풍수해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억 4,900만원 증가한 489억 9,400만원 편성되었다.

[2025년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풍수해·지진재해보험	36,360	38,045	48,994	10,949	28.8

자료: 행정안전부

○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2006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국가 피해지원 제도를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 입장에서는 국가 지원액 한계에 의한 보상 수준의 현실성 문제[31]를 해소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입 유형 및 계층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급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31) 정부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반면,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나 피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근거법령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보상재해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목 적 물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보 험 료 구 성	국비	지방비	자부담
	35.0% ~ 70.0%	9.0% ~ 30.0%	0.0% ~ 50.0%
사업자	DB, 현대, 삼성, KB, 농협, 한화, 메리츠		
보상종류	정액보상 / 실손보상		

자료: 행정안전부

가. 분석의견

○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다음과 관련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째, 2021년부터 보험 활성화를 위해 유사 정책보험 수준으로 정부 지원비율 상향에 따라 총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험사의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정부 재정부담 증가 및 연례적 예산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익 및 위험분담구조 조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동 사업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입 유형 및 계층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보험료 지원비율을 70~100%로 상향[32]한 결과 가입자 수가 꾸준히 상승해왔다.

[연도별·시설유형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구 분	2022		2023		2024.7월	
	가입	가입률	가입	가입률	가입	가입률
주택(건)	527,331	26.7	653,634	33.4	673,033	34.4
온실(ha)	3,983	15.8	4,494.9	18.2	4,753.2	19.4
소상공인(건)	195,792	31.9	142,112	23.1	88,197	10.4

자료: 행정안전부

32) 더불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가입유도 등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는 기업이 소상공인 가입자의 보험료 자부담분을 기부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기부가입 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리고 국가 재정을 통한 지원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총규모가 확대되면서 보험료 수입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3년 결산 기준 보험료 수입은 2019년도 대비 2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지급보험금 규모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변동 규모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영업손해율은 2019년 71%에서 28%로 감소하였다.

[2019~2023년 풍수해보험 손해율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F)	순 손해율 (F/C)	영업 손해율 (F/A)
	계 (A)	위험보험료(B)		부가보험료 (E)			
		순보험료 (C)	준비금 (D)				
2019	28,982,886	19,005,006	2,931,902	7,045,978	20,572,437	108%	71%
2020	36,202,947	24,185,935	2,966,275	9,050,737	26,831,516	111%	74%
2021	42,340,810	28,328,364	3,774,474	10,237,972	15,242,860	54%	36%
2022	72,148,234	47,913,486	6,627,144	17,607,604	24,184,033	50%	34%
2023	95,645,219	63,432,628	8,755,148	23,457,443	26,876,997	42%	28%

주: 1.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준비금(손실보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2. 2024년 2월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 변경
자료: 행정안전부

○ 이는 해당연도 다른 재해보험의 영업손해율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낮은 수준이고 유사 정책보험인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손해보험 보다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보험 운용 수익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정책보험 유형별 평균 영업손해율]

(단위: %)

구분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손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영업손해율	67.3	55.1	62.4

자료: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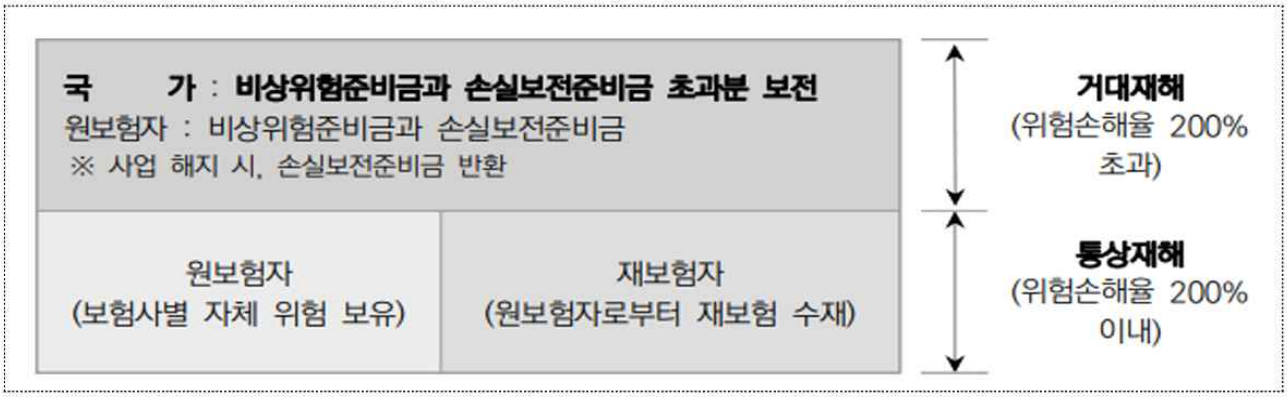
○ 반면 정부는 재정부담 증가가 가중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연례적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매년 360억원을 초과하는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지만 2021년은 예산을 초과하는 지급 수요 발생으로 이·전용을 통해 이를 충당(실집행률 103.7%)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도 동일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다음 해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 한편,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의 위험분산체계를 재보험방식을 통해 확인해보면 이는 '재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농작물재해보험 등과는 달리 보험사 내부에 적립되는 '손실보전준비금'을 활용하고 있다.

○ 이는,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충당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받는 체계[33]이다.

○ 이는 보험회사의 최대 손실을 제한하여 보험 공급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재보험의 일반적 유형인 '초과손해율 방식'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영업손실률이 낮으면서 재보험을 이용[34]하여 통상재해에 의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거대재해 발생 시 국고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 위험관리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유인이 낮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위험관리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3)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위험보험료의 9.0%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손해율 200%를 초과하는 거대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충당하고 손실액이 적립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34) 재난보험의 특성상 위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재보험자는 Korean Re이고 재재보험자는 Swiss Re, SCOR, Reak Re, VIG Re 등 국내외 12개 민영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해당기간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크게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율은 그대로 하되 일반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하향 조정했고,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와 수익구조 조정 등에서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부연하였다.

○ 도입 당시에는 민영보험사가 단독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 개발과 풍수해에 취약한 물건의 인수를 기피한다는 점에서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보험사가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으면서 위험에 대한 비용은 낮게 부담하는 반면 보험운용을 위한 재정투입과 함께 고위험은 다시 정부의 부담으로 남는 구조로 이러한 보험제도의 운용으로는 정책지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이를 고려하면 최근 보험사의 수익과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타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재보험의 모델에 대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보험의 보장성 강화, 손해율 추이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정부와 보험사 간 수익 및 위험부담 조정 등을 반영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예산부족을 이유로 4년간 당해연도에 미지급된 보험료를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유효보험 처리되도록 하고, 향후 3개년에 나누어 미납금을 처리한다는 계획하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거주지 재해발생 빈도, 대상시설 등에 따라 지원율 차별을 확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억 4,9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원 이상 감액되었으나 이 전년도 미납금 지불액을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144억 3,100만원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안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 전술한 144억 3,100만원은 미납보험료('20년~'23년간 예산부족으로 미납)로 총 434억 4,400만원의 미납금을 3개년에 나누어 납부한다는 계획하에 1차년도 소요 예산 144억 8,100만원을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해당 소요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험사에 납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0~2023년 풍수해보험 미납보험료 내역]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A)	소요액 (B)	미납 내역	
				보험료(B-A)	가입자 수
총 계		94,607	138,051	43,444	-
'20년	소계	15,437	17,839	2,402	-
	주택(세대)	4,054	6,164	2,110	58,089
	온실(ha)	7,945	10,413	2,468	773
	소상공인(건)	3,438	1,262	△2,176	△25,138
'21년	소계	19,376	24,520	5,144	-
	주택(세대)	4,260	7,922	3,662	100,594
	온실(ha)	10,153	13,900	3,747	691
	소상공인(건)	4,963	2,698	△2,265	△29,885
'22년	소계	24,637	41,367	16,730	-
	주택(세대)	8,368	10,860	2,492	122,472
	온실(ha)	13,163	20,717	7,554	1,343
	소상공인(건)	3,106	9,790	6,684	165,688
'23년	소계	35,157	54,325	19,168	-
	주택(세대)	8,293	12,841	4,548	165,524
	온실(ha)	16,019	28,754	12,735	1,035
	소상공인(건)	10,845	12,730	1,885	26,919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보험료의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지급수요가 발생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예산조정을 통한 지원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획재정부 및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기간 중 차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인 미경과보험료는 다음 해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을 유지했다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운용방식은 민간업체와의 공정한 계약에 기반한 정책사업 추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부채에 해당하나 재무제표나 예·결산서에 표기되지 않는 미납금을 수년 후 특정 기간 동안 상환하고자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보험료 지원 초과수요에 대하여 당해연도 미납 보험료를 차년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미납액 누적 문제를 이후 예산안에 편성하여 해소하는 운용방식을 지양하고, 가입대상 및 지역별(재해취약지역 등) 국비 지원율 차등화 확대[35]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5) 현재 정부 지원율(국비+지방비)을 일반국민의 주택대상 가입은 55%, 재해취약지역 저소득층은 100%, 재해취약지역 일반 가입자는 87.04%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차등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예산 부족에 의한 미납금 규모를 감소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2025년 예산안 분석 / 2024.10.) -

가. 현황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의 일부(47.5%)를 시·도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9,386억 3,100만원이 감액된 5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고등학교 무상교육	902,807	943,898	5,267	△938,631	△99.4

자료: 교육부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2024년 일몰됨에 따라 2025년 예산 정부안에는 그간 사업에 대한 정산분만 반영되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4월 9일 당·정·청 협의로 확정·발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초 · 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근거하는 의무지출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 고2·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이며, 대상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조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4항, 제14조에 근거하며,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시·도 및 시·군·구가 5%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47.5%를 조달한다. 다만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조항으로, 정부는 2025년 예산 정부안에는 그간 사업에 대한 정산분만 반영하였다.

○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총 소요예산은 1조 9,888억 6100만원이며, 국가 및 교육청이 각각 9,447억 900만원, 시·도 및 시·군·구가 994억 4,300만원을 부담하였다

[2020~202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지원자수	국가 (증액교부금)	교육청	시·도 및 시·군·구	합계
2020	877,512	659,406	659,406	69,411	1,388,223
2021	1,240,938	943,113	943,113	99,275	1,985,501
2022	1,203,386	914,573	914,573	96,270	1,925,416
2023	1,197,019	909,734	909,734	95,761	1,915,229
2024	1,243,036	944,709	944,709	99,443	1,988,861
2025	1,244,191	945,585	945,585	99,536	1,990,706

주: 예산 기준(정산분 미포함), 2025년은 학생 수×단가를 고려한 교육부 추계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속적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므로, 정부 재정여건,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당시 2020~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증액교부금), 교육청,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총 소요액의 47.5%, 47.5%, 5%를 부담하며, 2025년 이후의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교육부, 교육청, 시·도 및 시·군·구 간 한시적인 분담으로 결정된 것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육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 그러나 2025년 예산안의 정부제출 시까지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한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이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의무지출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이전재원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산정되므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656.6	677.4	704.2	730.3	756.2	(3.6)
ㅇ 의무지출	347.4	365.6	391.4	412.8	433.1	(5.7)
(비중)	52.9	54.0	55.6	56.5	57.3	
ㅇ 재량지출	309.2	311.8	312.8	317.5	323.1	(1.1)
(비중)	47.1	46.0	44.4	43.5	42.7	
ㅇ 지방이전재원	139.8	142.4	152.9	161.2	170.1	(5.0)
(의무지출 중 비중)	40.2	38.9	39.1	39.1	39.3	

주: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를 포함
자료: 교육부

- 한편, 국회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36]」 3건이 발의되어 있다.
- 따라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속적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 재정여건,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의무지출은 예산에 과소하게 편성되더라도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성격의 사업이므로, 의무지출이 예산안에 과소하게 편성되면 관리재정수지에 대한 적한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25년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각각 5.2%, 0.8% 증액함으로써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를 △2.9%로 관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의무지출 소요액이 예산안 편성을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 비율을 달성하기 어렵다. 향후 정부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면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정수지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2027.12.31.까지 한시적으로 무상교육비 지원하는 법률안이 2024.12.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정부는 2025.1.14.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함


의회